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5. 9.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5.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성훈 한양대학교 부교수

202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이 영

요 약

1. 제도 현황

- (도입 목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1999년에 도입됨
 - (과표양성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경우 영수증 거래 관행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소비자 대상 업종의 세원 노출을 위해 소비자가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함
 -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다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가 보편화되면서 과표양성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포착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 개선이라는 목적도 부각되는 상황임
 - (소비진작)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과 추가한도를 적용하여 관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불경기에는 한시적인 공제율 상향, 한도액 인상, 지출 확대액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 등으로 소비진작을 유도하여 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동 제도를 활용함

- (현행 제도) 동 제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에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40%를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함
 - (최저사용금액) 연간 총급여액의 25%임
 -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함
 -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 직불·체크·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사용분은 30%
- (공제한도) 역진성 완화를 위해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함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본한도 300만원 + 추가한도 300만원
 - 추가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체육 사용분의 합계에 적용함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기본한도 250만원 + 추가한도 200만원
 - 추가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합계에 적용함
- (조세지출 규모)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동 제도로 인하여 조세지출이 처음 발생한 2000년의 조세지출 규모는 350억원 정도였음
 - 이후 조세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해도 있으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가장 최근의 실적치가 보고된 2023년의 조세지출 규모는 3조 9,458억원으로 거의 4조원에 이르렀음
 - 또한 2024~2025년에도 조세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60%가량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동 제도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간 20만원 가까이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 소득공제의 약 20%가량이 동 소득공제로 인한 것임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서는 동 제도가 95% 정도를 차지함
 - 평균적으로 2020년에는 18만 5천원, 2021년에는 17만 2천원, 2022년에는 20만 1천원, 2023년에는 17만 8천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이로 인해 실효세율은 0.41~0.4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세부감 경감 정도는 소득계층별로 다름
 - 동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액 규모는 총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증가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하다가 대체로 6천만~8천만원 구간에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모습임
- 하지만 동 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액은 누진적인 세율의 영향으로 총급여액 1억~2억원 구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동 제도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은 총급여액 4천만~6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2. 타당성 분석

- 동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 제도를 통한 정부역할의 적절성, 동 제도의 수행방법의 적절성,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함
- 정부역할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과표양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세율을 음성화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거래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과표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투명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과표양성화, 소비진작,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과표양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은 동 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동 제도가 과표양성화와 소비진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
 - 다만 현금영수증에 대한 지원은 세정협조에 해당되어 동 제도를 통한 세제혜택 제공의 적절성이 인정됨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동 제도와 같이 소비지출에 근거한 제도가 아닌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은 소득에 근거한 제도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적절함

- 동 제도는 공제한도와 공제율 등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복잡한 제도는 납세자의 행태를 왜곡하여 동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
 - 다만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친 조세지출 증가 억제, 과세행정 협조 지원, 소득계층 간 형평성 제고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는 세원이 노출되는 결제수단을 활용해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다른 세제지원과는 보완관계에 있음
 - 동 목적의 다른 세제지원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소비자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동 제도와 정책 대상이 다르고 거래 단계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들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소득세 공제제도 중 동 제도와 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중복성의 문제가 있음
 - 다만 의료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와 동 소득공제 제도에 중복 적용되는 의료비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 교육비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와 같이 사용처를 기준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지출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용처를 기준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면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3.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특성 및 변화에 따라 분포, 집군(bunching),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을 실시함
 - (신용카드 사용액 분포 분석) 근로소득 연말정산 표본자료에 나타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분포를 분석하여,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요건(최저 사용 기준)

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 공제한도가 어떤 관계가 있고, 소득 수준 및 가구 규모에 따라 공제 구조의 변화(한도 및 최소 사용기준 조정)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함

- (공제한도 변화 효과) 2018년에는 총급여액 7천만~1억 2천만원 구간의 한도를 50만원 이하하였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표본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미친 영향을 사건연구 분석을 이용해 추정함
 -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한정하여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을 구성함
 -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구성 시 총급여액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 이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고려하여 가능한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한정하여 분석함
- (문화·체육 관련 추가공제 확대) 2018년 이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관련 지출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였는데, 이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를 사건연구 분석을 통해 분석함
 -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을 구분함
 - 과세 표본자료에는 대조집단(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집단)의 문화·체육 관련 지출이 보고되지 않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효과)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집군 분석과 사건연구 분석을 수행하여 2021~2022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가계 소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함
 - 집군 분석을 통해 정책 기준점(전년 대비 사용액 5% 증가)에서 소비가 집중되는지 분석하여 전략적 소비 행동이 있었는지를 분석함
 - 사건연구 분석을 통해 2021~2022년 처치 시점 후에 근로소득자(처치집단)의 총지출이 자영업자(대조집단)와 비교하여 더 증가하는지를 분석함
- (소득재분배 효과) 국세청 근로소득세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동 제도의 적용 유무에 따른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의 변화를 측정하여 근로소득자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함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분포 분석 결과 본 소득공제 제도는 구조적으로 역진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득·다인 가구일수록 공제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인 반면, 저소득·1인 가구일수록 낮은 소비 여력으로 공제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총급여가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고소득·다인 가구일수록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 저소득·1인 가구일수록 최저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음
 - 소득공제 특성상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본 제도는 구조적으로 역진성을 가짐
 - 또한 고소득·다인 가구일수록 공제한도를 초과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 집단의 공제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1인 가구일수록 생계비 수준이 낮고 소비 여력이 적어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는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을 통해 2018년 중상위 소득자의 공제한도 축소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사건연구 분석을 위해 총급여 4,500만~7,000만원 집단을 대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총급여 7,000만~9,500만원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함
 - 2018년 공제한도 축소 이후 처치 집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 문화·체육 지출에 대한 소비 촉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사건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문화·체육 지출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으로 인해 문화생활비 지출이 증가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2018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문화·체육 지출에 대한 30% 추가 공제를 도입함

- 사건연구 분석을 위해 총급여 4,500만~7,000만원 집단을 대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총급여 7,000만~9,500만원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함
 - 문화생활비 지출은 정책 시행 이후 처치집단의 문화생활비가 대조집단보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 확대가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는 소비 진작 목적의 추가공제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와 재정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집군 분석과 사건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과 20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추가 소득공제 정책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또는 총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함
- 집군 분석에서는 정책상 기준점인 전년 대비 5% 초과 신용카드 사용 구간에서 납세자들의 소비가 전략적으로 집중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특정 구간에 소비가 몰리는 집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기준점 주변에서의 탄력성 역시 비탄력적으로 추정됨
 - 이 결과는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 사건연구 분석에서는 근로소득자를 처치집단으로, 자영업자를 대조집단으로 설정한 후 2021년과 2022년 제도 도입 전후의 총지출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 시행 후 처치집단의 총 지출은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21년과 20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추가 소득공제 정책이 소비 진작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연도별 지니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이후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해당 제도가 소득불평등을 다소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줌
-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구조적으로 약함

- 그러나 2017년 이후 고소득자 대상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중저소득자 대상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니계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함
 - 최근 소득공제 적용 전후의 지니계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득계층 간 불평등 수준을 실질적으로 거의 변화시키지 않음을 시사함
- 지니계수 외에도 분위배율(10분위, 5분위) 및 소득 점유율(상위 10%, 하위 40%) 지표를 함께 살펴본 결과, 공제제도의 직접적인 구조적 불평등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제 적용 후 상하위 평균 간 소득 격차는 소폭 확대됨
 - 이는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적 특성(한계세율 차이 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소득 점유율 지표(상위 10%, 하위 40%) 기준으로는 전체 분배 구조의 변화는 미미하며, 특히 상위 10%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고소득층의 소득 집중도가 완화되는 양상도 일부 나타남

4. 정책제언

-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동 조세특례로 인하여 매년 4조원 이상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당 조세지출이 정책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아 매년 사중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공제제도는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과세행정 협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면 현금매출에 대한 세원이 즉각 음성화될 수 있음
- 다만 현재 동 제도의 이용률이 높고 동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장의 폐지보다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인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맞추어 동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인적공제 확대, 선택적 부부소득합산과세 등 소득세의 가족친화적 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상황임
 - 다만 이러한 제도 개편은 상당한 세수손실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소득세는 재원조달 기능 강화, 면세자 비율 축소,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세수효과, 소득계층별 세부담, 다른 공제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소득세의 중장기적인 개편 방향에 맞추어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 기본공제의 확대와 동 제도의 축소를 연계하여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하는 현행 기본공제는 2009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이에 기본공제 확대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세수손실, 면세자 비율 확대,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만약 기본공제를 확대하면서 동 제도를 축소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때 동 제도를 축소할 때에는 공제한도의 축소가 중요한데, 동 공제한도의 축소 규모는 기본공제 확대폭보다 더 클 필요가 있음
 - 동 공제는 가구원 수에 연동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확대폭과 동일한 폭으로 동 공제의 한도를 축소하면 세수손실이 클 수밖에 없음
 - 또한 기본공제 확대는 확대된 금액이 모두 적용되지만 동 공제의 한도 축소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동일하더라도 기본공제 확대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음

- 한편 동 제도를 폐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과세형평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필요경비 성격의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적합함
 - 다만 현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결제수단 선택을 왜곡하지 않을 정도의 세제혜택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공제대상 한도(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한도)와 공제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공제대상 한도를 낮게 설정할 경우 한도를 빠르게 소진하여 정책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 한도보다는 공제율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과 연간 500만원의 한도로 3%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은 모두 연간 최대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데, 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대 500만원까지 유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중복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처를 통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를 동 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음
 - 사용처를 통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목 차

I. 서론	17
II. 제도 현황	21
1. 제도 개요	23
2. 제도 연혁	34
3. 제도 현황	37
가. 조세지출 규모	37
나. 총급여액 구간별 소득공제 현황	54
III. 타당성 분석	61
1. 분석 개요	63
2. 정부역할의 적절성	63
3. 수행방법의 적절성	66
가. 정책수단의 적절성	66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71
다. 제도설계의 적절성	71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74
5. 타당성 분석 요약	76
IV. 효과성 분석	79
1. 분석 개요	81
2. 신용카드 사용금액 분포 분석	85
가. 분석 목적	85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85
다. 분석 결과	88

3.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분석	97
가. 분석 목적	97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98
다. 분석 결과	100
4. 문화·체육 지출 지원 효과 분석	104
가. 분석 목적	104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104
다. 분석 결과	107
5. 2021~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율 추가공제 효과 분석	110
가. 분석 목적	110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111
다. 분석 결과	116
6.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119
가. 분석 목적	119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120
다. 분석 결과	122
7. 효과성 분석 요약	126
V.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31
1. 종합평가	133
2. 정책제언	134
참고문헌	137
부록: 2019년 소득 규모별·가구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139

표 목 차

<표 II-1> 2010년 이후 제도 변화	35
<표 II-2> 2020년 이후 공제율 변동	35
<표 II-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인원 추이	43
<표 II-4>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추이	46
<표 II-5> 총 소득공제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비중 추이	49
<표 II-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비중 추이	52
<표 II-7> 「신용카드 소득공제」 평균 신고 금액 추이	54
<표 II-8>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총급여액 구간별 평균 소득공제액	57
<표 II-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총급여액 구간별 평균 세부담 감소액 ..	58
<표 II-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총급여액 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 ..	59
<표 III-1> 세무조사 현황	65
<표 III-2> 연령대별 선호하는 지급수단	68
<표 IV-1> 연도별 부문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율	82
<표 IV-2> 연도별 총급여 구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액	82
<표 IV-3> 2019년과 2023년 가구원 수 및 소득구간별 납세자 분포	87
<표 IV-4> 2019년과 2023년 가구원 수별 소득구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87
<표 IV-5> 2018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전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변화 ..	100
<표 IV-6> 2018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전후의 문화생활비 지출액 변화 ..	106
<표 IV-7> 2021년과 2022년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도입 전후의 총 지출액 변화	116
<표 IV-8>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전후 지니계수 추이	124
<표 IV-9>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 기준 분위배율 추이	125
<표 IV-10>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전후 소득 점유율 추이	125

그림 목 차

[그림 II-1]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추이	37
[그림 II-2] 『국세통계연보』상 조세지출 규모 추이	41
[그림 II-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인원 추이	42
[그림 II-4]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추이	45
[그림 II-5] 총 소득공제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비중 추이	48
[그림 II-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비중 추이	51
[그림 II-7] 「신용카드 소득공제」 평균 신고 금액 추이	53
[그림 II-8]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평균 세부담 및 실효세율 감소 규모 추이 ..	56
[그림 III-1]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67
[그림 III-2] 지급수단별 만족도 및 이용 비중	68
[그림 III-3]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평균 세부담 및 실효세율 감소 규모 추이 ..	72
[그림 IV-1] 2019년과 202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선과 실제 사용금액 분포 ..	90
[그림 IV-2] 2019년 가구 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선과 실제 사용금액 (국세청 데이터)	91
[그림 IV-3] 202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선과 실제 사용금액(국세청 데이터) ...	92
[그림 IV-4] 2023년 소득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94
[그림 IV-5] 2023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2천만~7천만원 집단	95
[그림 IV-6] 2023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7천만~1억 2천만원 집단과 1억 2천만원~3억원 집단	96
[그림 IV-7]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101
[그림 IV-8] 처치 및 대조집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103

[그림 IV-9] 재정패널 설문조사 문화생활비 지출액 설문문항	106
[그림 IV-10]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효과	108
[그림 IV-11]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효과: 가구원 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109
[그림 IV-12]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효과: 총급여액 범위에 대한 민감도 분석	109
[그림 IV-13] 정책 기준점(5%) 대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 변화율 차이 분포	112
[그림 IV-14] 가구 규모별 정책 기준점(5%) 대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 변화율 차이 분포	113
[그림 IV-15] 2021년 집군 분석 결과	117
[그림 IV-16] 2022년 집군 분석 결과	118
[그림 IV-17] 사건연구 분석 결과: 총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의 정책효과	119
[그림 IV-18]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전과 후의 지니계수 추이	123

I. 서론



I. 서론

- 본 연구는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평가함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함
 - 또한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됨
 -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대한민국정부, 2024)에 따르면 동 제도로 인한 2023년 조세지출 규모는 3조 9,458억원에 이룸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 초과 사용분의 15~40%를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하는 제도임
 -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직불·체크·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를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의 기본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함
 - 기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40%, 문화·체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 사용분의 30%를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의 추가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함

- 동 제도는 1999년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소비진작과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으로도 운용되고 있음
 - 동 제도의 도입 시점에는 사업자의 세원이 불투명했던 시기로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를 활성화하여 사업자의 과세기반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이후 동 제도는 일몰이 계속 연장되었고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대상 등이 확대 또는 축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동 제도는 현재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지출을 확대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경기가 부진할 때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음
 - 또한 동 제도에는 세원이 투명한 근로자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함

-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7년간 다양한 정책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출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일몰 연장 여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함
 -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의 현황에 대해 논의함
 - 제Ⅲ장에서는 동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함
 -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도 설계의 적절성, 재정사업 등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등을 평가함
 - 제Ⅳ장에서는 동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함
 - 동 제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문화·체육 지출에 미친 효과, 불경기의 소비진작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함
 - 제Ⅴ장에서는 동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와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함

Ⅱ. 제도 현황



II.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 (도입 목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1999년에 도입됨
 - (과표양성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경우 영수증 거래 관행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소비자 대상 업종의 세원 노출을 위해 소비자가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함
 -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다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가 보편화되면서 과표양성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포착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 개선이라는 목적도 부각되는 상황임
 - (소비진작)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과 추가한도를 적용하여 관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불경기에는 한시적인 공제율 상향, 한도액 인상, 지출 확대액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 등으로 소비진작을 유도하여 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동 제도를 활용함

- (현행 제도) 동 제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에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40%를 일정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함
 - (최저사용금액) 연간 총급여액의 25%임
 -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함
 -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 직불·체크·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사용분은 30%
 - (공제한도) 역진성 완화를 위해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함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본한도 300만원 + 추가한도 300만원
 - 추가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체육 사용분의 합계에 적용함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기본한도 250만원 + 추가한도 200만원
 - 추가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합계에 적용함
 - 한편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보다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을 경우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0%의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였음
 - 이에 대해서는 앞의 공제한도와 별도로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 적용함
- (적용 제외)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더라도 동 제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봄
 -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다만 중고자동차는 제외
- 우체국·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숙박업·스포츠시설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의료기관·보건소 및 출판사·신문사·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월세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7. 1.,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2013. 1. 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3. 23., 2020. 5. 19., 2021. 3. 16., 2022. 12. 31., 2023. 4. 11., 2023. 12. 31., 2024. 12. 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 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 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 사용분)×100분의 40

라. 삭제 <2023. 12. 31.>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100분의 10

8. 삭제 <2023. 4. 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 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 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 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20. 12. 29., 2024. 12. 31.>

⑥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1. 3. 16., 2022. 12. 31., 2023. 12. 31.>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⑪ 삭제 <2023. 4. 11.>

[전문개정 2010. 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타법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22. 2. 15.>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를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 ② 법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 ③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 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 1. 10.,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6. 2. 5.>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 ⑤ 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4. 2. 29.>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9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 10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⑦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기명식선불카드회원·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0.,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 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10. 7., 2010. 2. 18., 2013. 2. 15.,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2025. 2. 28.>
-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 사용분(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다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본다. <신설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2025. 2. 28.>
- ⑩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 2019. 2. 12.>
- ⑪ 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

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 2019. 2. 12.>

- ⑫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 2. 9., 2007. 2. 28., 2008. 2. 29., 2019. 2. 12.>
-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전자 현황,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2013. 3. 23., 2017. 7. 26.,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2025. 2. 28.>
-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9. 2. 12.>
- ⑮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9. 2. 12.>
- ⑯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신설 2025. 2. 28.>
- ⑰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신설 2025. 2. 28.>

[본조신설 1999. 10. 30.]

[제목개정 2002. 12. 30.]

2. 제도 연혁

- (제도 변화) 1999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제도 변화가 있었음
 - (최저사용금액) 1999년 총급여액의 10%로 도입 → 2004년 15% → 2008년 20% → 2010년 25%로 상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됨
 - (공제한도) 공제한도 =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text{Min}[\text{급여비율한도}, \text{정액한도}]$
 - (급여비율한도) 1999년 총급여액의 10%로 도입 → 2001년 20% → 2023년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됨
 - (정액한도) 1999년 300만원으로 도입 → 2001년 500만원 → 2010년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는 <표 II-1>과 같이 총급여 구간별로 차등화하여 7천만~1억 2천만원 또는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의 정액한도에 변화가 있었음
 - 또한 코로나19 위기 시기였던 2020년에는 모든 총급여 구간에 대해 정액한도를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하였음
 - (공제율) 1999년 10%의 공제율로 도입된 이후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
 - 2010년 이후 공제율과 공제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II-1>과 같음
 - 2020년 이후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표 II-2>와 같이 경제 환경에 따라 한시적으로 변동된 시기도 있었음

<표 II -1> 2010년 이후 제도 변화

연도	공제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기본한도(정액한도)	추가한도
2010년~ 2011년	신용 현금 직불·체크·선불	20% 20% 25%	300만원	-
2012년	신용 현금 직불·체크·선불 전통시장	20% 20% 30% 30%		전통시장 100만원
2013년~ 2016년	신용 현금	15% 30%		전통시장 100만원
2017년	직불·체크·선불 시장·교통	30% 30%	1억 2천만원 이하: 30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2018년~ 2019년	신용 현금 직불·체크·선불 시장·교통 문화·체육 (문화·체육은 충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	15% 30% 30% 40% 30%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1억 2천만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문화·체육 100만원 (2021~2022년: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2020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1억 2천만원: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30만원	
2021년~ 2022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1억 2천만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2023년~ 2025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료: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연혁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undefined>, 검색일자: 2025. 7. 21.

<표 II -2> 2020년 이후 공제율 변동

공제대상	2020년				2021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15%
현금·직불·체크·선불	30%	60%		30%	30%
문화·체육				40%	40%
전통시장	40%	80%		40%	40%
대중교통					

<표 II -2>의 계속

공제대상	2022년		2023년		2024년~
	1~6월	7~12월	1~3월	4~12월	
신용카드	15%	15%	15%	15%	15%
현금·직불·체크·선불	30%	30%	30%	30%	30%
문화·체육				40%	
전통시장	40%	40%	40%	50%	40%
대중교통		80%	80%	80%	

자료: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연혁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undefined>, 검색일자: 2025. 7. 21.

□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도 있었음

- (문화·체육 사용분 도입 및 범위 확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2018년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한 이후 2019년 박물관·미술관, 2020년 신문, 2022년 영화상영관, 2025년 체육시설이 추가됨
- (소비진작: 2014년 하반기 ~ 2015년 상반기) 2013년 대비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증가한 경우 한도 증액 없이 기본적인 도 내에서 다음을 추가공제함
 - (2014년)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013년 사용분의 50% 대비 2014년 하반기 사용분의 증가분의 10%
 - (2015년)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013년 사용분의 50% 대비 2015년 상반기 사용분의 증가분의 10%
- (소비진작: 2015년 하반기 ~ 2016년 상반기) 2014년 대비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증가한 경우 한도 증액 없이 기본적인 도 내에서 다음을 추가공제함
 - (2015년)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014년 사용분의 50% 대비 2015년 하반기 사용분의 증가분의 20%
 - (2016년)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014년 사용분의 50% 대비 2016년 상반기 사용분의 증가분의 20%
- (소비진작: 2021년, 2024년) 2021년과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 (소비진작: 2022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전체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각각에 대하여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를 100만원 통합 한도로 추가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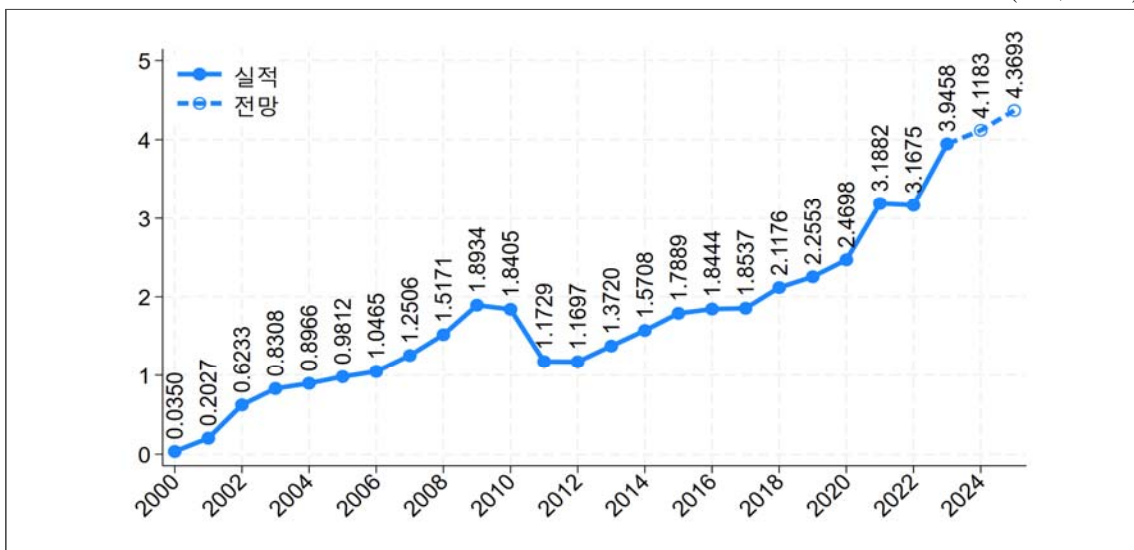
3. 제도 현황

가. 조세지출 규모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동 제도로 인하여 조세지출이 처음 발생한 2000년의 조세지출 규모는 350억원 정도였음
 - 이후 조세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해도 있으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가장 최근의 실적치가 보고된 2023년의 조세지출 규모는 3조 9,458억 원으로 거의 4조원에 이르렀음
 - 또한 2024~2025년에도 조세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 -1]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1. 김동준 외(2022), p. 101, <표 II-1-8>
 2.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정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추정 목적에 따라서도 추정 방법이 달라짐
 - 『국세통계연보』에는 동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액 규모에 대한 정보가 있으나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에 대한 정보는 없음
 - 따라서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총 소득공제액에 적정한 세율을 곱하여 추정해야 함
 - 만약 동 제도로 인한 한계적인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다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동 제도만 폐지할 경우의 세수효과를 추정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한계세율은 개인마다 다르고 『국세통계연보』에는 한계세율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음
 - 따라서 동 제도의 한계적인 조세지출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절함
 - 한편 동 제도로 인한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일 때는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절함
 - 특히 다른 공제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와의 비교 가능성과 소득세의 전체 공제제도로 인한 소득세 전체 조세지출 규모와의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한계세율보다는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연구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함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 동 제도로 인한 총 소득공제액 × 평균세율

- 위의 식에서 평균세율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평균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평균세율을 이와 같이 정의하면 『국세통계연보』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의를 통해 동 제도가 세부담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을 가장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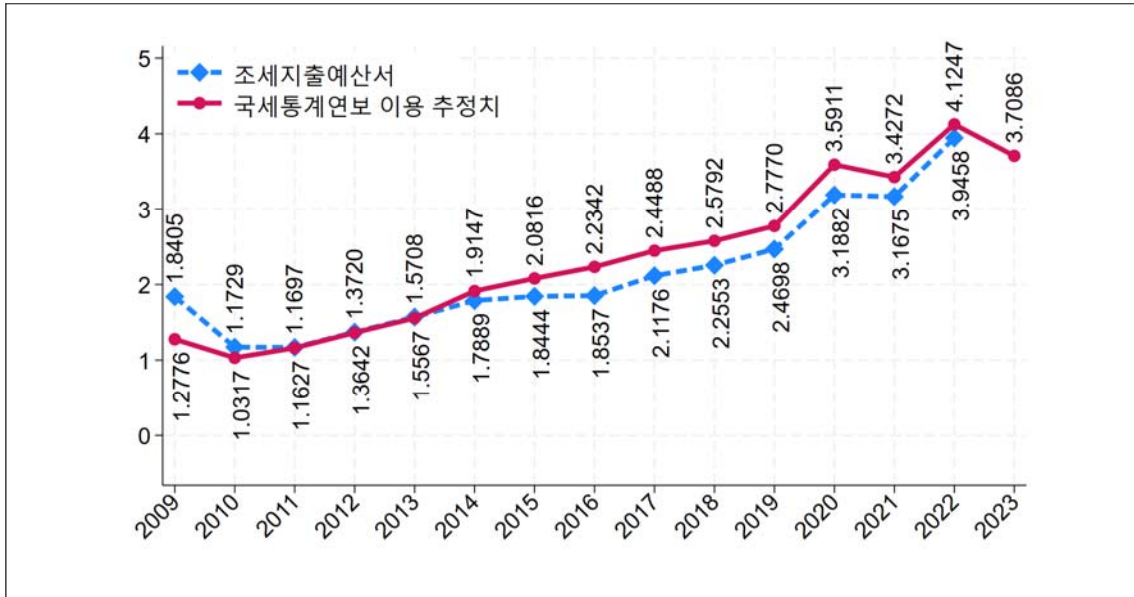
- 다만 평균세율을 본 연구와 같이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으로 정의할 경우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실제보다 과소 또는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먼저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가 과소추정될 가능성은 소득세 세율체계의 누진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함
 -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으로 정의한 평균세율에는 동 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는데, 만약 동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증가한다면 누진적인 세율구조의 특성상 평균세율은 본 연구가 정의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음
 - 반면 동 제도의 조세지출이 과대추정될 가능성은 본 연구가 정의한 평균세율이 소득세 계산 흐름에서 산출세액 이후 단계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감소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함
 - 동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액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과세표준을 통해 산출세액을 변화시키고, 이차적으로 산출세액의 변화는 일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도에 영향을 미쳐 결정세액을 변화시킴
 -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제도는 산출세액과 총급여액에 의해 결정되는 세액공제 제도임
 - 또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 또한 산출세액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
 -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세액감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산출세액의 70~90%를 감면함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총 1조 944억원의 세액감면액 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로 인한 세액감면액이 1조 739억원으로 약 98.1%를 차지함
 -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평균세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text{평균세율} = (\text{산출세액} - \text{근로소득세액공제} - \text{세액감면}) \div \text{과세표준}$
 - 다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산출세액과 상관없이 단지 한도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구간도 상당히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된 평균세율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음
-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과대추정하는 요인임

- 동 제도가 없다면 납세자는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른 공제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한 행태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도 공제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득세 부담이 현재의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태변화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때 총급여액(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을 12개로 구분하여 각 구간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 뒤 합산하는 방법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
- 12개의 총급여액 구간은 <표 II-8>을 참고하기 바람
 - 전체 총액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총급여액 구간별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이유는 평균세율이 소득수준별로 다르기 때문임
 -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동 소득공제액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동 제도의 조세지출을 추정할 때 단순히 전체 과세표준 대비 전체 산출세액으로 도출된 평균세율을 적용하면 조세지출이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음
 - 즉 누진적인 소득세 세율체계에서 전체 과세표준 대비 전체 산출세액으로 계산된 평균세율은 동 제도의 주 활용 계층을 고려해 산정된 평균세율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세율이 과대추정됨
 - 『국세통계연보』는 총급여액 구간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별로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된 통계를 제공하지만 과세표준 구간별 자료에는 과세미달자에 대한 통계가 제외되어 있어 본 연구는 총급여액 구간별 통계를 활용함
 - 과세미달자라도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세미달자가 제외된 통계를 이용한다면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가 과소추정됨
- 본 연구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추정한 조세지출 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규모와 유사함
-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추정한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역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관찰됨
 - 2010년 1조 317억원에서 2022년 4조 1,247억원까지 증가함

- 다만 2023년에는 3조 7,086억원으로 2022년보다 감소함
 - 이는 『조세지출예산서』가 2023년(2024년 전망치)에도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대조됨

[그림 II -2] 『국세통계연보』상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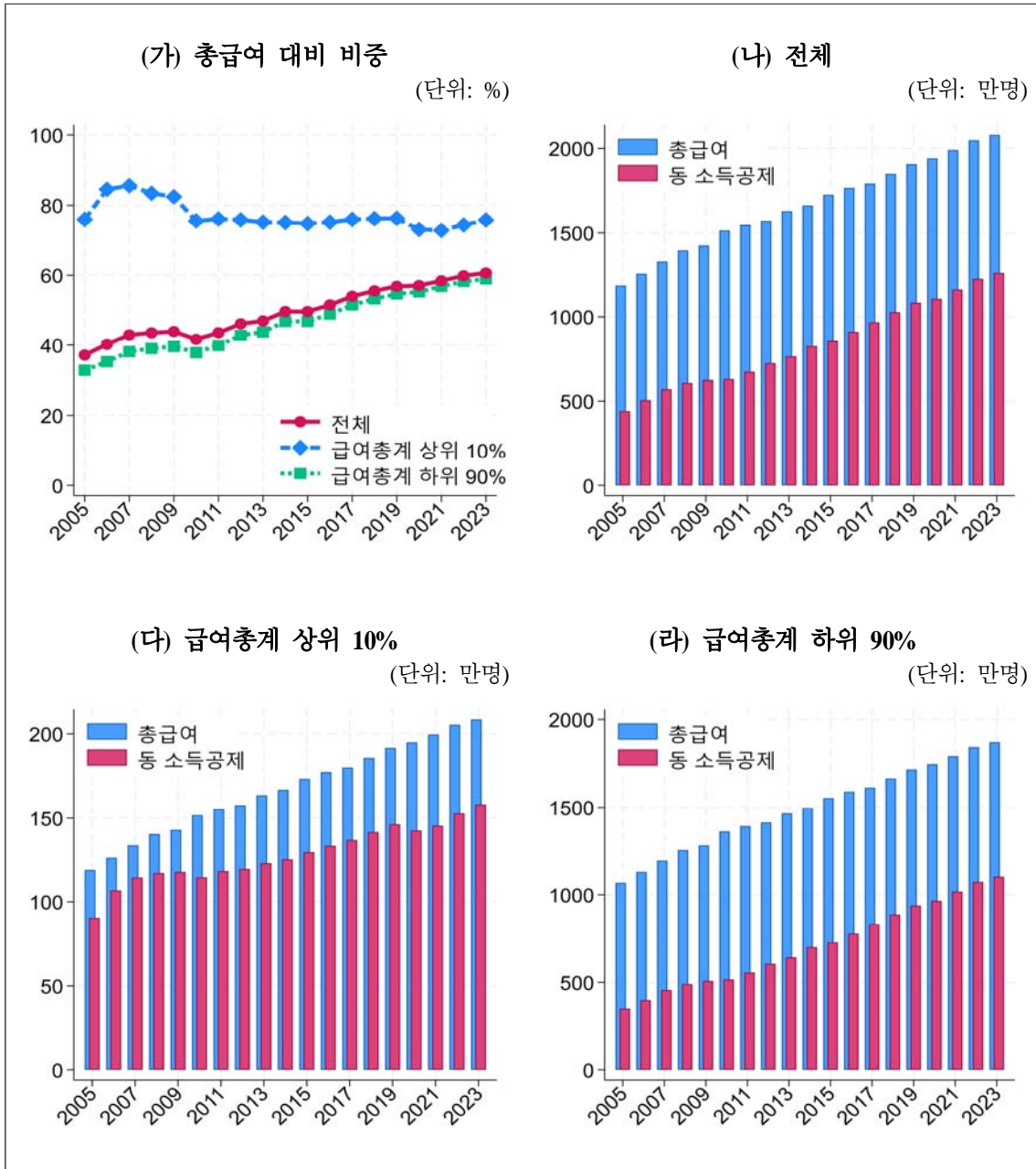


주: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귀속연도는 조세지출 연도의 1년 전이라고 가정하여 시차 조정
 자료: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김동준 외(2022), p. 101, <표 II-1-8>
3.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인원은 2005년 441만명에서 2023년 1,26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 신고 인원은 1,187만명에서 2,080만명으로 약 1.75배 증가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 제도의 신고 인원은 2.86배 증가함
 - 이에 총급여 신고 인원 대비 동 소득공제 신고 인원의 비중 또한 2005년 37.16%에서 2023년 60.65%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임
 - 다만 급여총계 기준 상위 10% 집단에서 동 제도의 신고 인원 비중은 2010년 이후 70% 초중반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됨

[그림 II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인원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표 II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인원 추이

(단위: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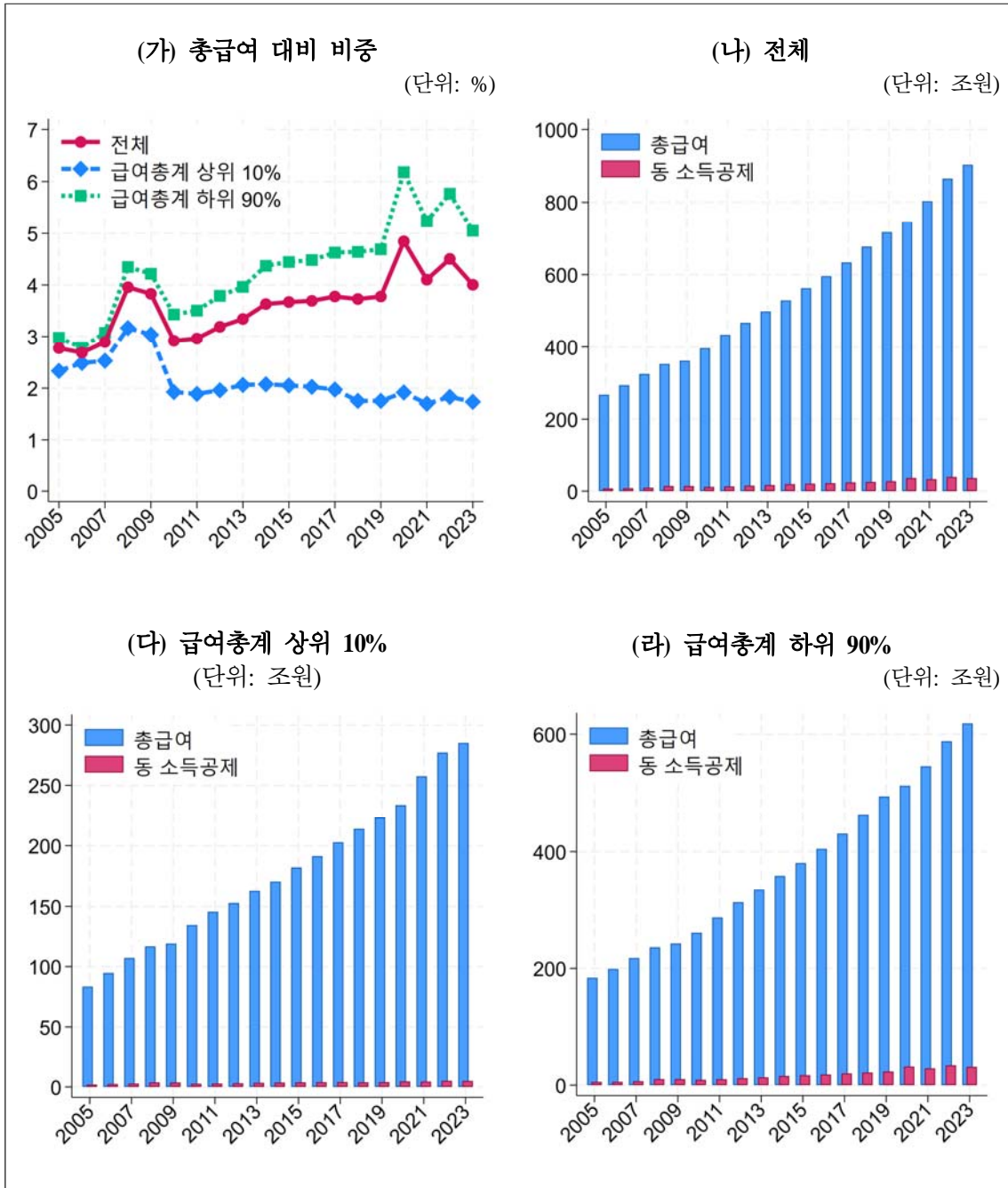
귀속 연도	총급여			등 소득공제			총급여 대비 비중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2005	1,186.86	119.03	1,067.83	441.03	90.45	350.58	37.16	75.99	32.83
2006	1,256.76	126.30	1,130.46	505.55	106.81	398.74	40.23	84.57	35.27
2007	1,329.28	133.74	1,195.54	570.47	114.50	455.97	42.92	85.62	38.14
2008	1,395.78	140.45	1,255.33	607.28	117.19	490.09	43.51	83.44	39.04
2009	1,425.01	142.94	1,282.07	625.40	117.86	507.53	43.89	82.46	39.59
2010	1,514.26	151.77	1,362.50	630.59	114.71	515.88	41.64	75.58	37.86
2011	1,548.05	155.40	1,392.65	673.97	118.32	555.65	43.54	76.14	39.90
2012	1,571.61	157.68	1,413.94	724.60	119.63	604.97	46.11	75.87	42.79
2013	1,629.51	163.60	1,465.91	764.57	123.05	641.52	46.92	75.21	43.76
2014	1,662.98	166.87	1,496.11	825.26	125.34	699.92	49.63	75.11	46.78
2015	1,726.32	173.33	1,552.98	856.45	129.65	726.80	49.61	74.80	46.80
2016	1,766.83	177.40	1,589.43	910.21	133.43	776.78	51.52	75.21	48.87
2017	1,792.53	180.05	1,612.48	967.73	136.84	830.89	53.99	76.00	51.53
2018	1,850.11	185.78	1,664.33	1,027.71	141.59	886.12	55.55	76.22	53.24
2019	1,907.49	191.67	1,715.82	1,084.05	146.28	937.77	56.83	76.32	54.65
2020	1,941.06	194.95	1,746.11	1,107.37	142.55	964.81	57.05	73.12	55.26
2021	1,990.77	199.59	1,791.18	1,163.10	145.41	1,017.69	58.42	72.85	56.82
2022	2,048.27	205.35	1,842.93	1,225.85	152.80	1,073.06	59.85	74.41	58.23
2023	2,079.53	208.52	1,871.01	1,261.31	158.12	1,103.19	60.65	75.83	58.9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 동 소득공제 신고 금액은 2005년 약 7조 4천억원에서 2013년 약 36조 2천억원으로 약 4.87배 증가함
 - 동 소득공제 신고 금액은 2022년에 약 39조원으로 가장 많았음
 - 동 소득공제 신고 금액은 2008~2009년에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2010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됨
 - 2010년 동 제도의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5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와 20%이던 최소사용금액 요건이 2010년부터 각각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25%로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0년 이후 동 소득공제 신고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신용카드의 사용을 위한 소비지출 자체의 변동성이 커진 것과 함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양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 동 제도의 경우 2020년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율에 따른 한시적인 추가공제도 적용되었음
 - 이뿐만 아니라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국민상생지원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총급여액 대비 동 소득공제액 신고 비중은 2005년 2.78%에서 2023년 4.00%로 증가함
 - 특히 같은 기간 급여총계 기준 하위 90% 집단의 총급여액 대비 동 소득공제액 비중은 2.98%에서 5.05%로 증가하였음
 -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이 비중이 6.18%까지 증가하였음
 - 반면 급여총계 상위 10% 집단의 총급여액 대비 동 소득공제액 비중은 2.33%에서 1.73%로 감소하였음
 - 또한 2020년 이후 동 비중이 등락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급여총계 하위 90% 집단과 비교하여 그 변동성은 작은 편에 속함

[그림 II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표 II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추이

(단위: 만명, 조원, %)

귀속 연도	총급여			등 소득공제			총급여 대비 비중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2005	267.39	83.44	183.94	7.42	1.95	5.47	2.78	2.33	2.98
2006	293.63	94.72	198.91	7.89	2.36	5.54	2.69	2.49	2.78
2007	324.81	107.12	217.69	9.40	2.71	6.69	2.89	2.53	3.07
2008	352.64	116.68	235.96	13.95	3.69	10.26	3.96	3.17	4.35
2009	361.47	119.09	242.38	13.84	3.62	10.22	3.83	3.04	4.22
2010	396.29	134.70	261.59	11.56	2.59	8.97	2.92	1.92	3.43
2011	433.27	145.59	287.67	12.83	2.75	10.08	2.96	1.89	3.50
2012	466.68	152.83	313.86	14.89	2.99	11.89	3.19	1.96	3.79
2013	498.03	162.80	335.23	16.64	3.36	13.29	3.34	2.06	3.96
2014	528.66	170.36	358.30	19.19	3.53	15.66	3.63	2.07	4.37
2015	562.51	182.05	380.46	20.65	3.74	16.91	3.67	2.05	4.45
2016	595.99	191.33	404.66	22.01	3.87	18.14	3.69	2.02	4.48
2017	633.61	202.77	430.84	23.93	4.00	19.94	3.78	1.97	4.63
2018	677.49	213.88	463.61	25.26	3.75	21.51	3.73	1.75	4.64
2019	717.53	223.17	494.36	27.11	3.91	23.20	3.78	1.75	4.69
2020	746.32	233.65	512.67	36.16	4.48	31.68	4.84	1.92	6.18
2021	803.21	257.53	545.68	32.95	4.37	28.58	4.10	1.70	5.24
2022	865.21	277.18	588.03	38.97	5.07	33.90	4.50	1.83	5.76
2023	903.38	285.18	618.20	36.18	4.95	31.23	4.00	1.73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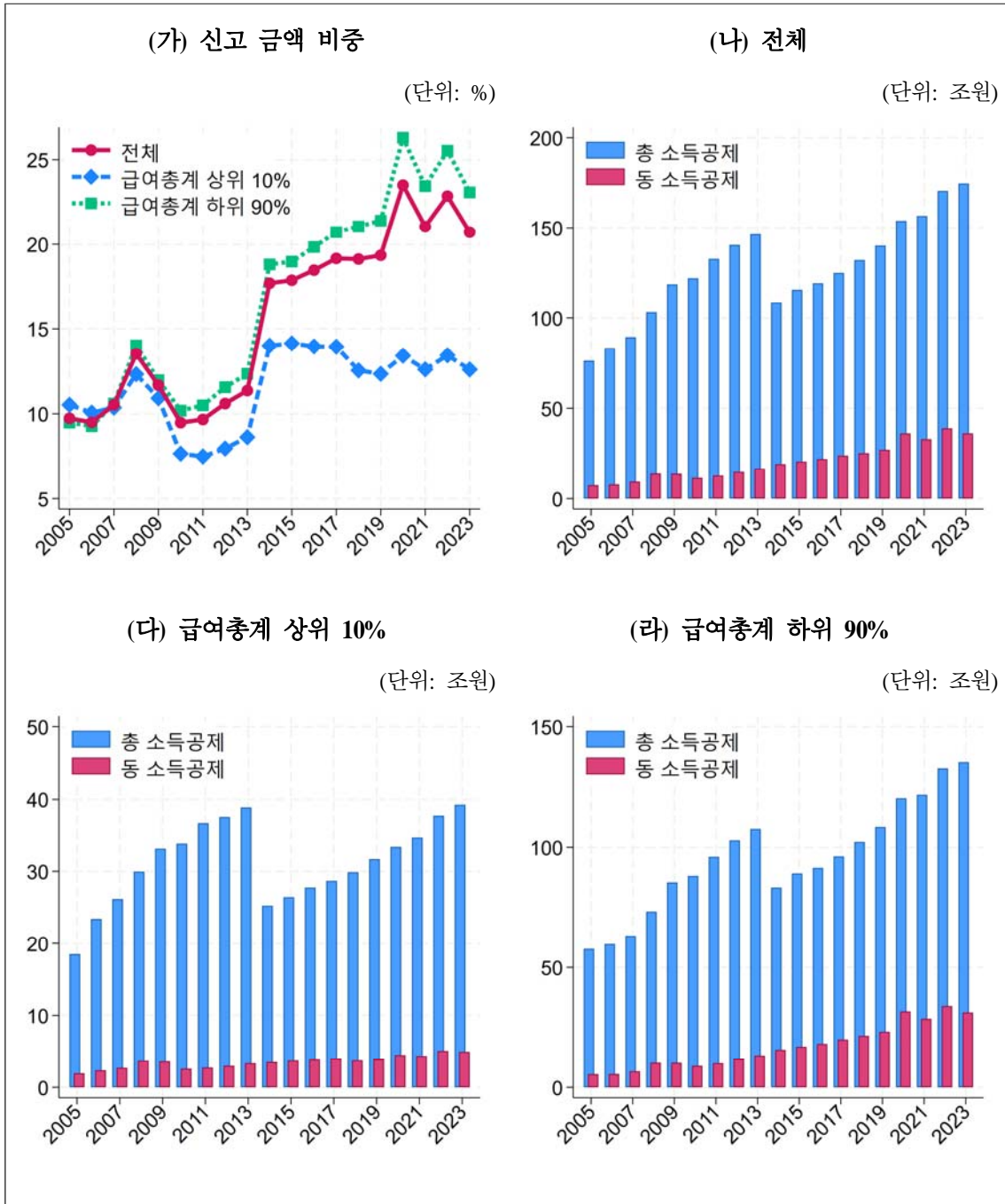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 총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0%를 상회함
 - 2023년 기준 총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7%였음
 - 같은 해 급여총계 하위 90% 계층의 경우 총 소득공제액에서 동 소득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1%였음
 - 다만 2023년 급여총계 상위 10% 계층의 경우 동 비중이 12.6%로 급여총계 하위 90% 계층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됨

- 총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임
 - 2023년 기준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공제가 전체 소득공제에서 약 72.5%를 차지하였음

- 한편 2014년 총 소득공제에서 동 제도의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됨
 - 2013년 11.36%였던 이 비중은 2014년 17.69%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총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4년 이후에도 전체 소득공제 대비 동 제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다만 급여총계 상위 10% 계층의 동 비중은 회복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고소득 계층에서 2018년 이후 동 제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한 동 제도의 기본한도가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됨
 - 2017년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기본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낮추었는데, 이로 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그림 II -5] 총 소득공제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비중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표 II -5> 총 소득공제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비중 추이

(단위: 만원, %)

귀속 연도	총 소득공제 신고 금액			등 소득공제 신고 금액			신고 금액 비중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2005	76.24	18.51	57.73	7.42	1.95	5.47	9.74	10.52	9.48
2006	83.12	23.41	59.72	7.89	2.36	5.54	9.50	10.07	9.27
2007	89.29	26.15	63.14	9.40	2.71	6.69	10.53	10.36	10.60
2008	103.18	29.97	73.21	13.95	3.69	10.26	13.52	12.33	14.01
2009	118.55	33.14	85.41	13.84	3.62	10.22	11.67	10.91	11.97
2010	121.95	33.83	88.12	11.56	2.59	8.97	9.48	7.66	10.18
2011	132.73	36.67	96.06	12.83	2.75	10.08	9.66	7.50	10.49
2012	140.47	37.59	102.89	14.89	2.99	11.89	10.60	7.96	11.56
2013	146.49	38.89	107.60	16.64	3.36	13.29	11.36	8.63	12.35
2014	108.50	25.24	83.26	19.19	3.53	15.66	17.69	14.00	18.81
2015	115.55	26.42	89.13	20.65	3.74	16.91	17.87	14.14	18.97
2016	119.20	27.75	91.45	22.01	3.87	18.14	18.47	13.96	19.83
2017	124.91	28.68	96.22	23.93	4.00	19.94	19.16	13.94	20.72
2018	132.09	29.88	102.21	25.26	3.75	21.51	19.12	12.55	21.05
2019	140.11	31.70	108.41	27.11	3.91	23.20	19.35	12.34	21.40
2020	153.87	33.39	120.48	36.16	4.48	31.68	23.50	13.41	26.30
2021	156.60	34.68	121.92	32.95	4.37	28.58	21.04	12.61	23.44
2022	170.55	37.76	132.80	38.97	5.07	33.90	22.85	13.43	25.53
2023	174.63	39.27	135.37	36.18	4.95	31.23	20.72	12.60	23.0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 2013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매년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관찰됨
 - 2023년 기준 전체 신고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액에서 동 제도의 소득공제액이 95.4%를 차지하였음
 - 같은 해 급여총계 하위 90%의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97.3%에 이르렀음
 - 2023년 급여총계 상위 10%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85.4%로 급여총계 하위 90% 계층보다는 낮으나 절대적인 비중은 높음
 - 2023년 급여총계 상위 10% 계층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와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가 각각 5.7%와 6.6%를 차지하였음

- 2013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서 동 소득공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됨
 - 이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도가 20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편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2014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었음
 - 2012년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 또한 이 시기에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비중이 빠르게 커졌기 때문임

<표 II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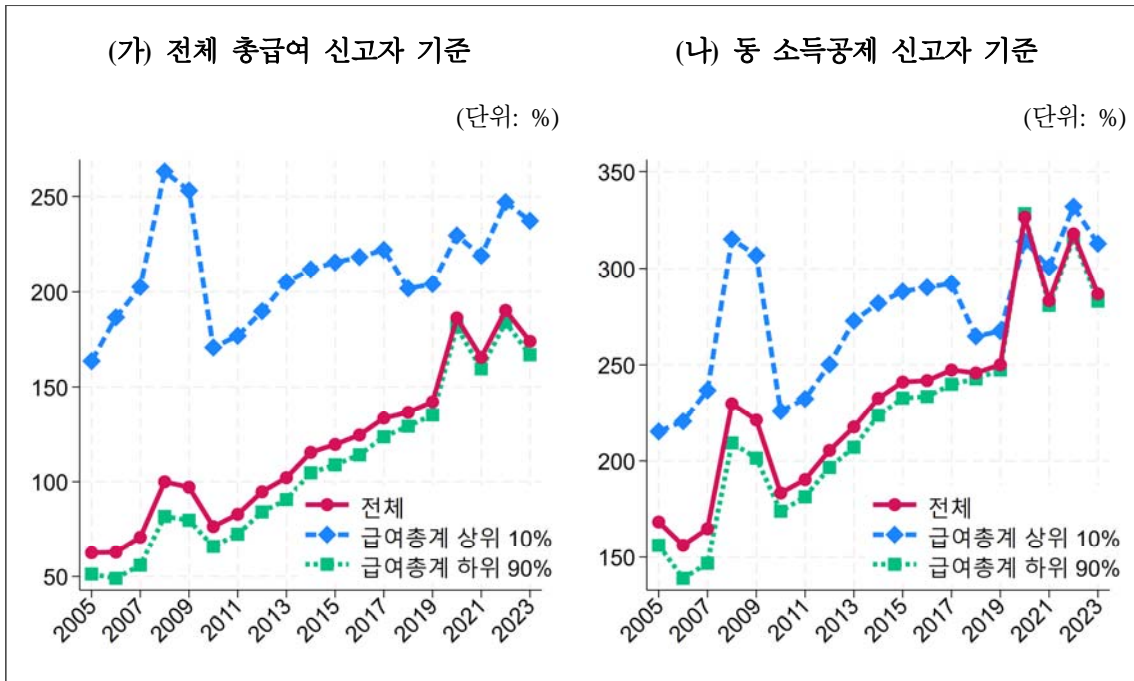
귀속 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신고 금액			동 소득공제 신고 금액			신고 금액 비중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전체	급여 총계 상위 10%	급여 총계 하위 90%
2005	9.23	2.86	6.37	7.42	1.95	5.47	80.40	68.10	85.91
2006	10.53	3.85	6.68	7.89	2.36	5.54	74.96	61.16	82.92
2007	12.73	4.54	8.19	9.40	2.71	6.69	73.85	59.74	81.66
2008	19.22	6.29	12.93	13.95	3.69	10.26	72.59	58.69	79.35
2009	19.64	6.45	13.19	13.84	3.62	10.22	70.47	56.11	77.49
2010	17.49	5.44	12.05	11.56	2.59	8.97	66.12	47.62	74.48
2011	19.78	6.13	13.65	12.83	2.75	10.08	64.84	44.83	73.82
2012	22.18	6.43	15.75	14.89	2.99	11.89	67.12	46.58	75.50
2013	17.40	3.78	13.62	16.64	3.36	13.29	95.65	88.72	97.58
2014	20.12	3.98	16.14	19.19	3.53	15.66	95.38	88.78	97.00
2015	21.65	4.16	17.49	20.65	3.74	16.91	95.36	89.72	96.70
2016	23.08	4.32	18.76	22.01	3.87	18.14	95.39	89.74	96.69
2017	24.99	4.45	20.54	23.93	4.00	19.94	95.78	89.94	97.04
2018	26.48	4.26	22.22	25.26	3.75	21.51	95.41	88.05	96.81
2019	28.40	4.47	23.93	27.11	3.91	23.20	95.47	87.54	96.95
2020	37.68	5.16	32.53	36.16	4.48	31.68	95.95	86.82	97.40
2021	34.85	5.28	29.57	32.95	4.37	28.58	94.57	82.83	96.66
2022	40.85	6.00	34.85	38.97	5.07	33.90	95.40	84.48	97.29
2023	37.91	5.79	32.12	36.18	4.95	31.23	95.43	85.39	97.2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체 신고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2005년 62만 5천원에서 2023년 174만원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급여총계 기준 상위 10% 계층이 하위 90% 계층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관찰됨
 - 다만 그 격차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도 관찰됨
 -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2018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기본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동 제도를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면 동 제도의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2005년 168만 3천원에서 2023년 286만 8천원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2020년에는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이 326만 5천원까지 증가하였음
 - 또한 2019년까지는 급여총계 기준 상위 10% 계층이 하위 90% 계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하였으나, 2020년에는 오히려 하위 90% 계층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하였음

[그림 II -7] 「신용카드 소득공제」 평균 신고 금액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표 II -7> 「신용카드 소득공제」 평균 신고 금액 추이

(단위: 만원)

귀속연도	전체 총급여 신고자 기준			동 소득공제 신고자 기준		
	전체	급여총계 상위 10%	급여총계 하위 90%	전체	급여총계 상위 10%	급여총계 하위 90%
2005	62.54	163.60	51.27	168.29	215.29	156.17
2006	62.82	186.57	48.99	156.16	220.61	138.90
2007	70.72	202.65	55.96	164.79	236.69	146.74
2008	99.96	262.98	81.73	229.76	315.18	209.33
2009	97.12	253.04	79.74	221.30	306.87	201.42
2010	76.36	170.76	65.85	183.37	225.93	173.91
2011	82.87	176.86	72.38	190.34	232.29	181.40
2012	94.72	189.83	84.12	205.45	250.21	196.60
2013	102.13	205.19	90.63	217.68	272.80	207.10
2014	115.42	211.83	104.67	232.58	282.01	223.73
2015	119.60	215.48	108.90	241.08	288.09	232.70
2016	124.58	218.34	114.12	241.83	290.29	233.50
2017	133.52	222.08	123.64	247.33	292.21	239.93
2018	136.54	201.84	129.25	245.80	264.83	242.76
2019	142.11	204.12	135.19	250.07	267.46	247.35
2020	186.28	229.65	181.44	326.53	314.07	328.37
2021	165.53	219.05	159.57	283.32	300.67	280.84
2022	190.26	246.99	183.94	317.91	331.93	315.92
2023	173.97	237.25	166.92	286.83	312.88	283.1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나. 총급여액 구간별 소득공제 현황

-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총급여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평균 소득공제액, 평균 세부담 감소액,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을 살펴봄
 - 평균 소득공제액 = 동 소득공제액 ÷ 총급여 신고 인원
 - 평균 세부담 감소액 = 평균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 = 평균 세부담 감소액 ÷ 총급여액
 - 평균 계산 시 동 소득공제의 미신청자도 포함하여 계산함

- 동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액 규모는 총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대체로 6천만~8천만원 구간에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모습임
 - 2023년 기준으로 총급여액 6천만~8천만원 구간의 평균 소득공제액이 274만 6천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대체로 동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액 규모는 총급여액 6천만~8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크지만, 2009년에는 8천만~1억원, 2010년과 2020년에는 4천만~6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크게 관찰됨
 - 이처럼 소득공제액 규모가 총급여액에 대하여 역-U자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이 많아져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커짐
 -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증가 속도는 점차 느려짐
 - 하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이기 때문에 최소사용금액은 총급여액에 대해 선형으로 증가함
 - 이에 총급여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동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사용금액보다 빠르게 증가하다가 총급여액 6천만~8천만원 구간을 지난 이후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 속도가 최소사용금액보다 느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동 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액은 누진적인 세율의 영향으로 총급여액 1억~2억원 구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의 소득세 부담이 약 47만 1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액이 동일하다면 평균세율 또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 감소액이 더 큼
 - 다만 총급여액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동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낮아져 세율이 높음에도 1억~2억원 구간보다 세부담 감소액이 작음

- 한편 동 제도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은 총급여액 4천만~6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해당 구간의 실효세율 감소폭은 약 0.54%p였음
- 이는 총급여액에서 세부담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당 소득 계층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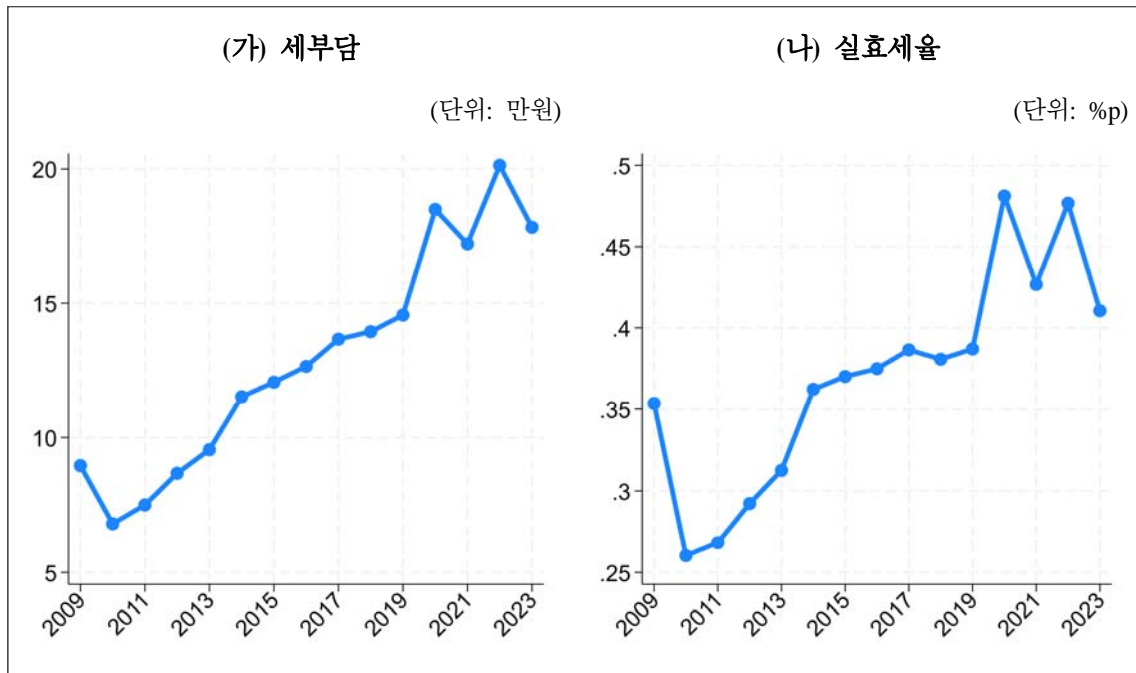
□ 한편 동 제도로 인한 평균적인 1인당 세부담 감소액은 2010년 6만 8천원에서 2023년 17만 8천원으로 증가함

- 1인당 세부담 감소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22년으로 20만 1천원이었음

□ 또한 동 제도로 인한 평균적인 실효세율 감소폭은 2010년 0.26%p에서 2023년 0.41%p로 증가함

- 2020년 이후 실효세율 감소폭은 0.4~0.5%p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되며, 2020년에는 0.48%p로 실효세율 감소폭이 관찰 기간 중 가장 컸음

[그림 II -8]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평균 세부담 및 실효세율 감소 규모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추정

〈표 II -8〉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총급여액 구간별 평균 소득공제액

(단위: 만원)

귀속 연도	전체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09	97.12	0.27	35.23	121.90	192.97	245.81	258.96	262.70	234.16	128.65	63.82	27.21	6.25
2010	76.36	0.25	33.82	104.66	154.58	183.18	181.78	173.11	145.27	63.37	28.17	9.93	3.53
2011	82.87	0.24	34.24	105.86	158.04	188.90	190.63	182.75	154.11	68.74	32.13	12.31	3.53
2012	94.72	0.24	36.36	114.29	170.69	201.74	205.86	197.99	169.68	74.85	35.34	14.19	3.64
2013	102.13	0.23	37.23	116.66	178.00	214.99	222.80	215.84	186.22	81.40	37.77	12.87	4.13
2014	115.42	2.80	50.97	129.96	186.35	222.19	231.31	223.48	194.31	86.50	38.55	14.34	4.12
2015	119.60	3.29	52.76	135.17	189.08	225.50	236.64	228.29	199.70	90.78	41.66	16.52	6.20
2016	124.58	3.46	54.44	135.37	188.70	226.98	239.70	232.00	204.48	97.56	46.05	20.04	11.50
2017	133.52	3.61	57.96	137.69	192.16	234.64	252.11	246.67	197.06	86.21	44.18	19.57	10.02
2018	136.54	4.02	58.73	137.64	192.43	236.24	242.87	222.03	186.77	93.61	47.57	20.27	12.99
2019	142.11	3.85	54.53	136.13	194.03	238.68	245.68	225.67	190.13	94.68	50.39	22.08	12.96
2020	186.28	4.24	78.41	198.42	261.01	297.78	291.14	258.87	212.47	102.47	54.82	24.96	14.82
2021	165.53	4.68	68.56	162.06	218.96	262.44	270.73	248.84	211.56	124.27	70.00	33.98	18.39
2022	190.26	4.82	76.54	182.65	246.71	291.47	301.63	282.80	243.57	152.27	87.66	41.07	21.50
2023	173.97	4.27	65.83	156.75	216.19	261.26	274.58	258.44	241.47	158.71	90.73	44.05	20.3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추정

〈표 II-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총급여액 구간별 평균 세부담 감소액

(단위: 만원)

귀속 연도	전체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09	8.97	0.02	2.11	7.43	14.29	24.14	31.96	38.11	45.55	35.03	18.42	8.23	2.04
2010	6.81	0.01	2.03	6.39	11.41	17.60	21.57	24.23	27.05	16.52	8.06	3.05	1.15
2011	7.51	0.01	2.05	6.47	11.76	18.12	22.49	25.46	28.26	17.87	9.12	3.75	1.16
2012	8.68	0.01	2.18	6.99	12.73	19.54	24.34	27.59	31.03	19.53	10.10	4.52	1.27
2013	9.55	0.01	2.23	7.15	13.37	21.02	26.46	30.13	34.20	21.32	10.84	4.08	1.45
2014	11.51	0.17	3.06	8.39	15.66	23.91	29.32	34.08	37.99	23.86	11.69	4.75	1.48
2015	12.06	0.20	3.17	8.75	15.97	24.33	30.02	34.81	39.19	25.13	12.73	5.49	2.22
2016	12.65	0.21	3.27	8.79	16.02	24.47	30.34	35.23	40.25	26.98	14.16	6.69	4.12
2017	13.66	0.22	3.48	8.97	16.40	25.32	31.85	37.37	39.20	24.03	13.82	6.62	3.64
2018	13.94	0.24	3.52	8.97	16.50	25.52	30.70	33.67	37.27	26.21	15.07	7.14	5.06
2019	14.56	0.23	3.27	8.85	16.65	25.78	31.02	34.14	37.79	26.65	16.10	7.87	5.16
2020	18.50	0.25	4.71	12.79	21.78	31.88	36.58	39.01	42.35	28.86	17.52	8.91	5.91
2021	17.22	0.28	4.11	10.54	18.65	28.34	34.14	37.62	42.58	34.92	22.40	12.14	7.60
2022	20.14	0.29	4.59	11.94	20.89	31.43	37.96	42.56	48.91	42.71	28.07	14.65	8.89
2023	17.83	0.26	3.95	9.73	16.61	26.50	32.97	36.63	47.11	43.94	28.68	15.44	8.2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추정

〈표 II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총급여액 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

(단위: %p)

귀속 연도	전체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09	0.35	0.00	0.15	0.30	0.41	0.49	0.47	0.43	0.36	0.15	0.05	0.01	0.00
2010	0.26	0.00	0.14	0.26	0.33	0.36	0.32	0.27	0.22	0.07	0.02	0.00	0.00
2011	0.27	0.00	0.14	0.26	0.34	0.37	0.33	0.29	0.23	0.07	0.02	0.01	0.00
2012	0.29	0.00	0.15	0.28	0.37	0.40	0.36	0.31	0.25	0.08	0.03	0.01	0.00
2013	0.31	0.00	0.15	0.29	0.39	0.43	0.39	0.34	0.28	0.09	0.03	0.01	0.00
2014	0.36	0.04	0.20	0.34	0.45	0.49	0.43	0.38	0.31	0.10	0.03	0.01	0.00
2015	0.37	0.04	0.21	0.36	0.46	0.50	0.43	0.39	0.31	0.11	0.03	0.01	0.00
2016	0.37	0.04	0.22	0.36	0.46	0.50	0.44	0.40	0.32	0.11	0.04	0.01	0.00
2017	0.39	0.05	0.23	0.36	0.47	0.52	0.46	0.42	0.31	0.10	0.04	0.01	0.00
2018	0.38	0.05	0.23	0.36	0.48	0.52	0.44	0.38	0.29	0.11	0.04	0.01	0.00
2019	0.39	0.05	0.22	0.36	0.48	0.53	0.45	0.39	0.30	0.11	0.04	0.01	0.00
2020	0.48	0.05	0.31	0.52	0.63	0.65	0.53	0.44	0.33	0.12	0.05	0.01	0.00
2021	0.43	0.06	0.27	0.42	0.54	0.58	0.49	0.42	0.33	0.15	0.06	0.02	0.00
2022	0.48	0.06	0.30	0.48	0.60	0.64	0.55	0.48	0.38	0.18	0.08	0.02	0.00
2023	0.41	0.05	0.26	0.38	0.48	0.54	0.48	0.41	0.36	0.19	0.08	0.02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추정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1. 분석 개요

- 본 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함
 - 동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 제도를 통한 정부역할의 적절성, 동 제도의 수행방법의 적절성,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함
 - 다만 일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효과성 분석 결과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효과성 분석은 제Ⅳ장에서 수행하더라도 관련 결과를 인용하여 동 제도가 타당성에 대해 살펴봄

2. 정부역할의 적절성

- 동 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임
 - 그러나 이 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지출을 확대하고, 불경기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표도 존재함
 - 또한 세원이 투명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세원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있음
- 동 제도를 통한 정부역할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의 과표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
 - 사업자 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공식 경제가 아닌 지하경제 등 비공식 경제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는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비공식 경제의 확대는 공식 경제를 축소시키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제주체의 세부담을 확대시켜 과세형평성을 약화시킴

□ 한편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최근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데이터를 더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의 전체 세원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표양성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한계가 있지만 『국세통계연보』의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최근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3년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19.4%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도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4.1%와 4.5%를 기록해 과거와 비교해 최근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다만 <표 III-1>의 세무조사 현황은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모두 포함된 통계로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실제보다 높은 비중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현황에 나타난 소득탈루율은 실제 소득탈루율보다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AI 기술의 발전 등으로 소득탈루에 대한 포착률이 높아진다면 실제 소득탈루율은 감소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소득탈루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음

<표 III-1> 세무조사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고 소득금액 [A]	결정 소득금액 [B]	소득 탈루율 [(B-A)/B]	신고 소득금액 (C)	결정 소득금액 (D)	소득 탈루율 [(D-C)/D]
2006	1,240,974	1,862,174	33.36	42,038,248	47,442,864	11.39
2007	1,182,516	1,964,895	39.82	37,178,834	44,224,855	15.93
2008	1,824,736	2,388,934	23.62	44,048,991	49,391,486	10.82
2009	1,018,171	1,629,558	37.52	31,394,068	35,542,607	11.67
2010	1,366,156	2,063,179	33.78	55,632,928	63,073,066	11.80
2011	1,411,935	2,237,917	36.91	69,755,779	77,104,668	9.53
2012	1,447,403	2,550,362	43.25	72,447,054	82,181,325	11.84
2013	1,794,401	2,847,301	36.98	107,400,776	120,142,525	10.61
2014	1,757,511	2,859,139	38.53	158,868,601	168,779,712	5.87
2015	1,654,468	2,571,837	35.67	89,294,010	98,553,060	9.39
2016	2,490,022	3,412,321	27.03	69,057,133	84,145,904	17.93
2017	1,561,410	2,477,321	36.97	150,751,170	164,700,507	8.47
2018	1,578,060	2,641,401	40.26	151,656,904	163,192,109	7.07
2019	1,990,455	3,082,833	35.43	117,336,068	130,905,894	10.37
2020	1,404,050	2,475,507	43.28	95,121,169	101,988,871	6.73
2021	1,972,739	2,734,224	27.85	217,207,313	226,501,044	4.10
2022	2,372,055	3,208,042	26.06	137,735,329	146,405,262	5.92
2023	2,111,623	2,619,963	19.40	207,929,101	217,799,110	4.5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불경기에 부진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
 -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체육에 대한 지원 또한 환경 개선, 취약 계층 지원, 가치재의 소비 증진 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임

- 상대적으로 세율이 투명한 근로자와 세율이 불투명한 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근로자보다 세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제도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 하지만 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고려하여 소득세제를 설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소득 탈루를 정당화시키고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가중되어 역차별적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부담을 결정할 때 제도적으로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세무조사 노력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사업자의 소득 탈루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과도한 행정비용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만으로 이를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제도적으로 경감시켜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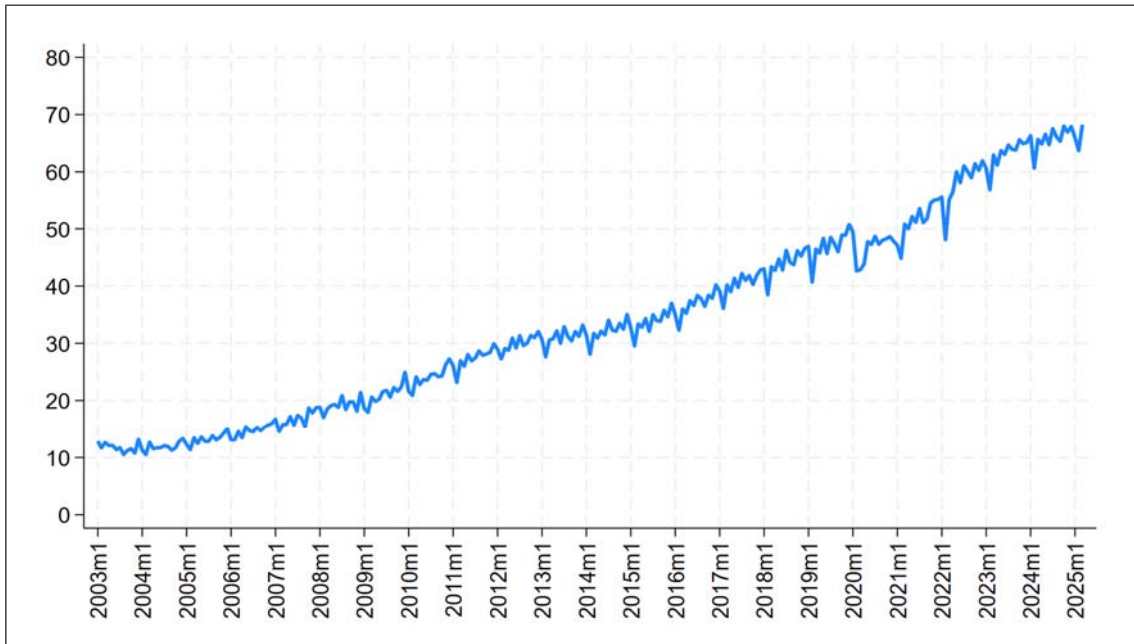
3. 수행방법의 적절성

가. 정책수단의 적절성

- 동 제도가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의 여부는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1999년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용카드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현재는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음
 -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03년 1월 12조 9천억원에서 2025년 3월 68조 3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그러나 향후 동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동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더라도 과표양성화 정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은 대부분 사중손실에 해당됨

[그림 Ⅲ-1]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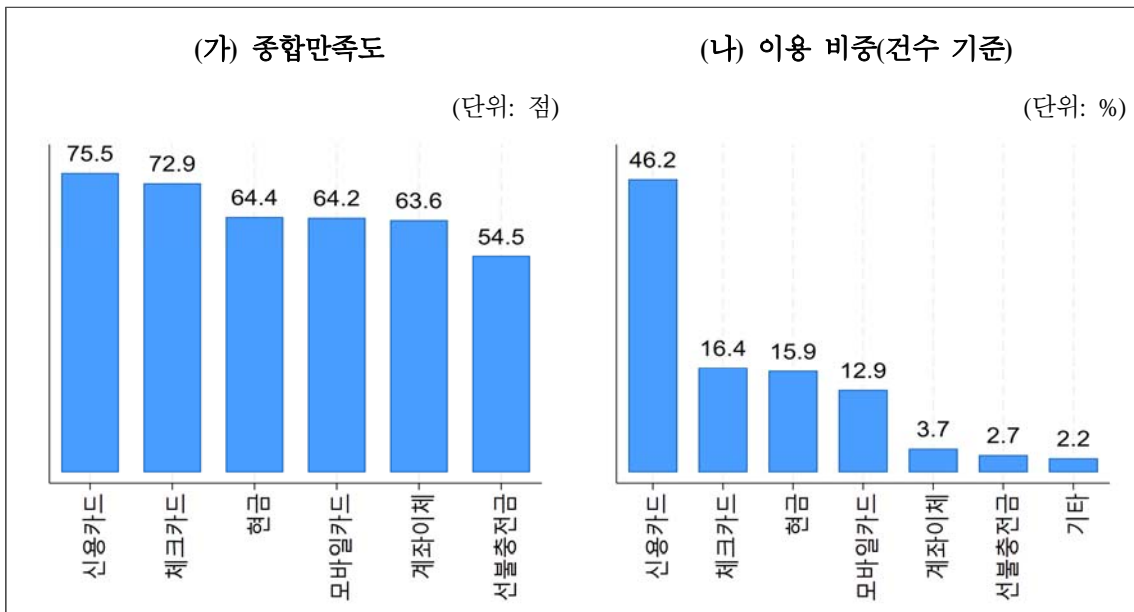
주: 개인의 일반구매 이용금액과 할부구매 이용금액의 합계액

자료: 한국은행, 『7.5.1. 신용카드』,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5. 7. 25.

- 제Ⅳ장 제3절에서는 동 제도의 과표양성화 효과와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동 제도가 과표양성화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과표양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동 제도의 적절성을 뒷받침하지 못하였음
 - 제Ⅳ장 제3절에서는 2018년 동 제도의 공제한도 축소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동 제도를 축소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감소하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함
 - 현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동 제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거래방식의 등장으로 전자결제가 점점 더 보편화는 추세임과 동시에 이러한 결제수단의 편리성 및 부가적인 혜택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조성욱·이상아·이정인(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은 이용의 편리성에 힘입어 다양한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모바일카드와 체크카드 등 과표양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급수단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60대 이상의 경우 지급수단으로 현금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연령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동 제도가 이러한 성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동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축소하더라도 전자결제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Ⅲ-2] 지급수단별 만족도 및 이용 비중



주: 전체 조사대상자(3,551명) 기준
 자료: 조성욱·이상아·이정인(2025), p. 13.

<표 Ⅲ-2> 연령대별 선호하는 지급수단

구분	현금	신용카드	모바일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선불충전금
전체	12.2	54.7	19.0	13.1	0.6	0.3
20대	3.6	38.0	36.8	19.5	1.4	0.7
30대	2.9	49.5	34.9	12.3	0.4	0.0
40대	2.7	62.4	24.3	10.1	0.4	0.1
50대	5.5	68.8	14.5	10.6	0.5	0.1
60대 이상	30.2	52.1	2.9	13.7	0.6	0.5

주: 1. 전체 조사대상자(3,551명) 기준
 2. 모바일카드는 실물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드사 앱(앱카드)이나 간편결제 앱(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등록해 두고 결제에 이용하는 지급수단
 자료: 조성욱·이상아·이정인(2025), p. 6.

- 소비진작을 위한 동 제도의 적절성 또한 효과성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불경기에 동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추가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등의 소비지출 확대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동 제도를 통한 조세지출은 사중손실에 해당됨

- 제IV장 제4절과 제5절에서는 동 제도의 소비진작과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동 제도가 소비진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진작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동 제도의 적절성을 뒷받침하지 못하였음
 - 제4절에서는 2018년 도입된 문화·체육 관련 추가공제가 관련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동 제로도 인하여 관련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는 통계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제5절에서는 2021~20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 역시 동 제도가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전반적인 소비진작이나 특정 목적의 소비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제도와 같은 세제지원은 광범위한 정책 대상에게 비교적 단순한 전달체계로 지원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세제지원은 그 특성상 경제행위 시점보다 수혜 시점이 늦고, 일시적인 소득 증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작은 중고소득층이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동 제도를 통한 소비진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소비진작을 위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제약으로 소비지출을 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계층은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동 제도는 그러한 계층에게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따라서 저소득층을 선별지원 하기에는 현금성 이전지출과 같은 재정지출 사업이 더 타당함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 제도와 같이 광범위한

지출에 근거한 제도보다는 소득에 근거한 제도를 통해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소득세제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세원이 사업자보다 투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임
 - 그러나 근로자의 소비지출 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자의 세원이 더 투명해진다거나 동일한 소득수준의 사업자보다 과세형평성이 더 악화된다는 근거는 없음
 - 한편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계산 시 지출을 공제하는 것은 필요경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지출하는 가치 재 등 특정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일 때 타당성이 확보됨
 - 하지만 동 제도와 같이 광범위한 항목의 지출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저축과 소비 간의 중립성도 훼손됨
- 한편 현금영수증 공제는 과세행정 협조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타당성이 있음
-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이 없다면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할 이유가 없음
 -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발급할 유인도 크지 않음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음
 -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동 세제혜택이 없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없음
 - 현금 거래는 과표를 음성화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유인 체계를 계속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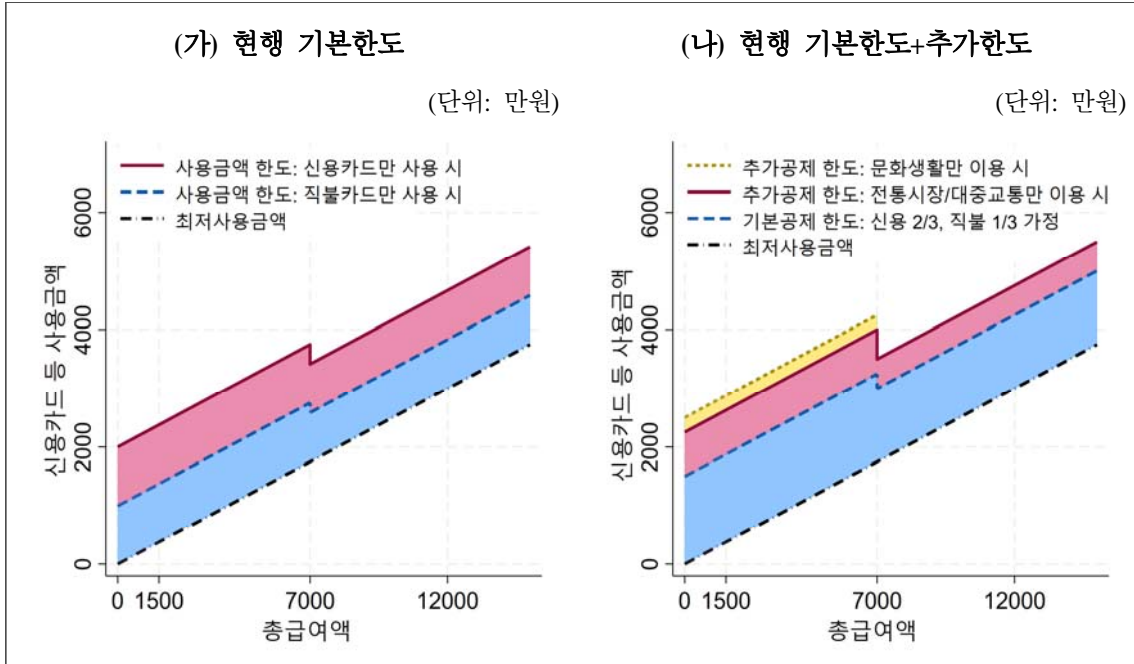
- 현재 근로자만 대상이고 사업자 등은 비대상이나, 과표양성화와 소비진작이 정책 목표라면 사업자 등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 다만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 동 제도를 허용하면 이중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제도설계의 적절성

- 제도 설계 측면에서 동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제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임
 - 다양한 요소가 제도를 구성하고 있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 행위로 인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임
 - 이와 같은 복잡한 제도는 납세자의 행태를 왜곡하여 동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
- 동 제도가 복잡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용액이 아닌 공제액에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임
 - [그림 III-3-(가)]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비율에 따라 기본공제의 한도는 붉은색 영역 내의 어딘가에서 결정됨
 -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의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사용금액 한도는 높아짐
 -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 추가공제까지 고려하면 제도의 적용 영역은 더욱 복잡해지는데, 기본공제에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비율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한도가 달라짐
 - [그림 III-3-(나)]의 파란색 영역은 기본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 사용분이 2/3, 직불카드 사용분이 1/3이라는 가정하에 사용금액 한도임
 - 만약 이 비율이 달라진다면 [그림 III-3-(나)]의 파란색 영역이 [그림 III-3-(가)]의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공제는 이에 덧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한도가 달라짐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 해당 사용분 이동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그림 Ⅲ-3]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평균 세부담 및 실효세율 감소 규모 추이



자료: 저자 작성

- 다만 이렇게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아닌 공제액에 한도를 둘 경우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조세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조세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것이 적절함
 - 동 제도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 등의 사용분이 예상보다 너무 높다면 사용액에 한도를 둘 경우 조세지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사용액보다는 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현행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15%, 직불카드 사용액에는 30%를 적용하는 등 공제율이 15~40%까지 다양한데, 이 또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임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고 직불카드

등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특정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 또한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등은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체크카드와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세정에 협조하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제도는 소득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음

-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동 제도로 인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급여액 기준 공제한도의 차등 적용이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 정도를 미미하지만 소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제IV장 제6절에서 분석함

- 다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역진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 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2014년부터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관련 공제 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나 동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환되지 않았음

- 이에 김재진·기은선(2018) 등의 선행연구는 동 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음

□ 제도가 복잡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친 조세지출 증가 억제, 과세행정 협조 지원, 소득계층 간 형평성 제고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 경제주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세원이 노출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가 존재함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결제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함
 - 단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한도는 1천만원, 공제율은 1.3%를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당 12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여 받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건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이러한 과표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는 대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결제정보 전송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동 제도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중복 문제는 없음
 - 소비자와 공급자,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유사중복이 아닌 서로 보완관계에 있음

- 한편 소득세에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는데, 동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지출은 대부분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함
 -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세

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또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동 소득공제의 적용에서 제외됨

□ 하지만 동 소득공제는 일부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표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동 소득공제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또한 의료비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동 소득공제와 함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

□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의료비를 동 소득공제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비는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됨
- 이처럼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전체 의료비 지출 중 일부만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이때 특정 의료비를 식별하여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의료비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실제로 2005~2008년 「의료비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의료비는 동 소득공제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이후 폐지되었음
- 당시에는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하였음

□ 교육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교육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의 문제가 없으나 그 외 교육비는 중복 적용의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으로 판별이 가능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동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공제 적용 여부를 판별하는 데 신용카드 사용처 외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커지는 문제 발생함
 - 예를 들어,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만 대상인데, 미취학 아동과 취학 학생이 모두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한 학원비라는 정보만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음
 -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런 경우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의 큰 증가 없이 신용카드 사용처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동 공제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타당성 분석 요약

- 타당성 분석 결과 과표양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세원을 음성화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거래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과표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원이 투명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과표양성화, 소비진작,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과표양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은 동 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동 제도가 과표양성화와 소비진작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

- 다만 현금영수증에 대한 지원은 세정협조에 해당되어 동 제도를 통한 세제혜택 제공의 적절성이 인정됨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동 제도와 같이 소비지출에 근거한 제도가 아닌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은 소득에 근거한 제도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적절함

□ 동 제도는 공제한도와 공제율 등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복잡한 제도는 납세자의 행태를 왜곡하여 동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
- 다만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친 조세지출 증가 억제, 과세행정 협조 지원, 소득계층 간 형평성 제고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는 세원이 노출되는 결제수단을 활용해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다른 세제지원과는 보완관계에 있음
 - 동 목적의 다른 세제지원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소비자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동 제도와 정책 대상이 다르고 거래 단계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들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소득세 공제제도 중 동 제도와 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중복성의 문제가 있음
 - 다만 의료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와 동 소득공제 제도에 중복 적용되는 의료비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 교육비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와 같이 사용처를 기준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지출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용처를 기준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면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1. 분석 개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투명하게 양성화되고, 과소신고 유인이 감소함
 - 자영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자율신고 방식에 따라 소득을 보고하므로, 비용 과다 계상 및 수입 과소 신고를 통한 소득 탈루 가능성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며, 이는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7천만원 이하 집단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고, 7천만원 초과 집단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됨
 - 2013~2017년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은 15%이며, 현금·직불·선불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은 30%임
 - 2018년 이후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은 40%로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집단의 경우에는 공제대상 항목 역시 확대되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등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시작함
 - 2017년에는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집단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 2018년에는 총급여 7천만~1억 2천만원 이하 집단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모든 소득집단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하였으며, 해당 인상된 공제한도는 2021년 다시 기존 수준으로 환원됨

- 2021년과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공제하되,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를 부여함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최대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문화·체육 등 부문에 대해 최대 100만원 추가공제가 적용됨
- 2023년부터 공제한도가 간소화되어 항목별 구분 없이 소득 구간에 따라 200만~300만원이 적용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표 IV-1> 연도별 부문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율

(단위: %)

연도	신용	현금·직불·선불	시장·교통	문화·체육
2014~2017	15	30	30	-
2018~	15	30	40	30

- 주: 1. 2020년, 2022년, 2023년에는 부문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본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함
 2. 2020년 3월에는 모든 부문의 기본공제율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4~7월에는 기본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함
 3. 2022년 7~12월과 2023년에는 대중교통 부문 기본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였고, 2023년 문화·체육과 전통시장 부문의 기본공제율을 10%p 상향 조정하여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표 IV-2> 연도별 총급여 구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액

(단위: 만원)

연도	총급여 구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1억 2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
2014~2016	300	300	300
2017	300	300	200
2018~2019	300	250	200
2020	330	280	230
2021~2022	300	250	200
2023	300	250	250

자료: 저자 작성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 변화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소득 수준, 신용카드 사용 습관, 제도 이해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정책목적을 일정 수준 달성하였고, 소비자들이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본 제도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장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 표본자료와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함
 -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 표본자료)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자료로 총급여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주요 소득세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과 공제액 정보도 포함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
 - 분석 목적에 따라 2015~2023년에 대한 반복 횡단면 자료와 패널자료를 구분하여 사용함
 - 다만 소득세 신고자료에는 인구·경제·사회학적 변수가 부족하여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략변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외 실제 지출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한계임
 - (재정패널 자료) 재정패널 자료는 납세자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및 표본 수가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 정보와 함께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경제·사회학적 변수를 추가로 제공
 - 또한 재정패널 자료는 소비 항목별로 지출 정보를 제공하여 동 제도의 변화가 가계지출 전체 및 항목별 지출, 그리고 전체 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 지출 비중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특성 및 변화에 따라 분포, 집군(bunching),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을 실시함
 - (신용카드 사용액 분포 분석) 근로소득 연말정산 표본자료에 나타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분포를 분석하여,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요건(최저 사용 기준)

과 공제한도가 어떤 관계가 있고, 소득 수준 및 가구 규모에 따라 공제 구조의 변화(한도 및 최소 사용기준 조정)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함

- (공제한도 변화 효과) 2018년에는 총급여액 7천만~1억 2천만원 구간의 한도를 50만원 인하하였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표본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미친 영향을 사건연구 분석을 이용해 추정함
 -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한정하여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을 구성함
 -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구성 시 총급여액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 이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고려하여 가능한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한정하여 분석함
- (문화·체육 관련 추가공제 확대) 2018년 이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관련 지출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였는데, 이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를 사건연구 분석을 통해 분석함
 -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을 구분함
 - 과세 표본자료에는 대조집단(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집단)의 문화·체육 관련 지출이 보고되지 않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효과)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집군 분석과 사건연구 분석을 수행하여 2021~2022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가계 소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함
 - 집군 분석을 통해 정책 기준점(전년 대비 사용액 5% 증가)에서 소비가 집중되는지 분석하여 전략적 소비 행동이 있었는지를 분석함
 - 사건연구 분석을 통해 2021~2022년 처치 시점 후에 근로소득자(처치집단)의 총지출이 자영업자(대조집단)와 비교하여 더 증가하는지를 분석함
- (소득재분배 효과) 국세청 근로소득세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동 제도의 적용 유무에 따른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의 변화를 측정하여 근로소득자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함

2. 신용카드 사용금액 분포 분석

가. 분석 목적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촉진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최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총급여의 25%로 설정하였고, 공제한도는 2013~2023년 기간에 총 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차등 적용됨
 - 2023년 이전에는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도로 적용함
 - 2023년 이후에는 공제한도가 단순하게 개편되면서 총급여액의 20% 기준이 없어지고 300만원을 한도로 적용함

- 본 분석의 목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구조가 실제 근로소득자의 소비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 내 설정된 최저 사용 기준 및 공제한도가 제도 실효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임
 - 공제 요건 및 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소비자 행태에 미치는 유인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분포가 기준선 인근에서 어떠한 밀집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함
 - 특히 소득수준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제도상의 최저 사용기준 및 공제한도 주변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봄
 - 이러한 분석은 향후 공제한도 조정이나 공제율 변경 등 제도 개편이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 본 분석은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수준 및 가구 규모에 따른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분포가 제도상 기준(최소 사용기준 및 공제한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봄
 - 본 분석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9년 및 2023년 귀속

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함

- 이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근로소득세 신고자료 중 각 연도별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된 반복 횡단면 자료임
 - 이 자료는 각 연도별로 전체 근로소득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축함
 - 본 분석에서 사용한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는 동일 납세자를 추적하는 패널자료가 아님

-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소득 상위층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줌
 - 2019년과 2023년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 표본자료에 나타난 소득세 납세자 분포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65.94%에서 69.36%로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11.39%에서 8.86%로 감소함
 - 소득 구간별로는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중이 30.98%에서 26.03%로 감소한 반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상위 소득층 비중은 12.69%에서 16.24%로 증가함

- 2019년과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교해 보면, 평균 사용액은 1,701만원에서 2,094만원으로 증가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2019년과 2023년 모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등 평균 사용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모든 가구 집단에서 2023년 신용카드 등 평균 사용금액은 2019년보다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의 사용금액 증가율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9년과 2023년 모두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카드 등 평균 사용금액이 큰 경향이 나타남
 - 모든 소득 집단에서 2023년 신용카드 등 평균 사용금액은 2019년보다 증가하였으며, 1억 2천만~3억원 이하 집단의 사용금액 증가율이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 2019년과 2023년 가구원 수 및 소득구간별 납세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3년		
	납세자수	비중	납세자수	비중	
전체	185,300	100.00	201,411	100.00	
가구원 수	1명	122,181	65.94	139,704	69.36
	2명	23,975	12.94	25,964	12.89
	3명	18,033	9.73	17,901	8.89
	4명 이상	21,111	11.39	17,842	8.86
2천만원 이하		57,407	30.98	52,437	26.03
2천만~7천만원 이하		104,372	56.33	116,270	57.73
7천만~1억 2천만 이하		19,307	10.42	25,086	12.46
1억 2천만~3억원 이하		4,214	2.27	7,618	3.78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4> 2019년과 2023년 가구원 수별 소득구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단위: 만원)

구분	신용카드 사용금액								
	2019년				2023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1,701	1,920	0	14,986	2,094	2,256	0	14,976	
가구원 수	1명	1,009	1,346	0	14,966	1,341	1,645	0	14,940
	2명	2,257	1,817	0	14,723	2,909	2,129	0	14,849
	3명	2,981	2,011	0	14,986	3,792	2,314	0	14,976
	4명 이상	3,984	2,221	0	14,888	5,097	2,638	0	14,957
2천만~7천만원 이하		1,950	1,637	0	14,986	2,182	1,854	0	14,976
7천만~1억 2천만 이하		3,913	2,078	0	14,986	4,345	2,389	0	14,920
1억 2천만~3억원 이하		4,757	2,788	0	14,888	5,408	2,925	0	14,957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됨

-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사용기준과 공제한도를 제도 기준선으로 설정함
 - 최소 사용기준은 총 급여액의 25%임

- 2019년 공제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300만원을 차등 적용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 금액으로 적용함
- 2023년부터 7천만원 이하 집단에 대해 총급여의 20% 기준은 폐지되고, 1억 2천만원 초과 집단의 공제 한도는 7천만~1억 2천만원 이하 집단과 동일한 250만원임
- 각 납세자에 대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도 기준선(최소 사용기준 및 공제한도)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함
-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기준선 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에 대한 분포가 최저 기준 미달, 기준선 부근, 공제한도 초과 중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봄
- 소득 및 가구 규모별 신용카드 사용금액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납세자를 총급여 수준(예: 2천만~7천만원, 7천만~1억 2천만원, 1억 2천만~3억원)과 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 이상)로 분류

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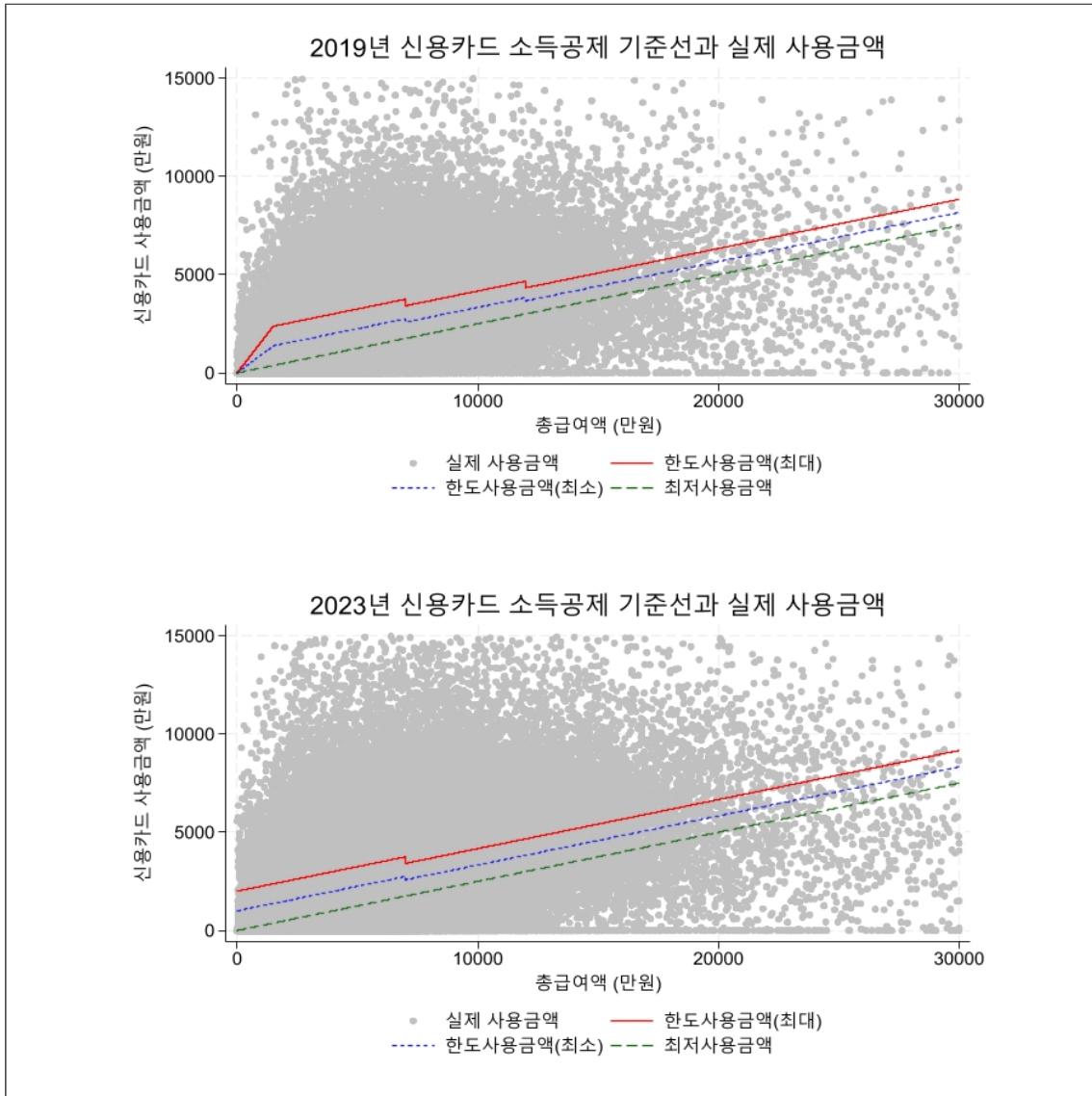
- [그림 IV-1]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최저사용금액 및 한도금액 기준선과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줌
 - x 축은 총급여액(만원)이고, y 축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만원)을 의미함
 - 회색 점은 실제 납세자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의미함
 - 초록 실선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금액 기준선(총급여액의 25%)을 의미함
 - 빨간색 실선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기준선(공제율 30% 적용)이고, 파란색 실선은 최소 한도 기준선(공제율 15% 적용)임
- 2019년 빨간색 실선의 꺾인점(kink)은 총급여 7천만원, 1억 2천만원 지점에서 뚜렷하게 보이며, 2023년의 경우에는 7천만원에서만 꺾인점이 관찰됨

- 2019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설계되었으나, 2023년에는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일괄적으로 25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음

- 2019년의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구간에서 총급여가 증가할수록 한도사용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공제한도로 300만원이 아닌 총급여액의 20%가 적용되었기 때문임
 - 2022년 이전에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로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었음
 - 2023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정 시 적용되었던 총급여의 20% 한도 조건이 폐지되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납세자에게는 공제한도 300만원이 일괄적으로 적용됨

- [그림 IV-1]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3년 모두 빨간색 실선 위에 위치한 회색점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
 - 공제한도 기준선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이 매우 많고, 총급여가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집단 비중은 더 큼
 - 총급여가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크고, 공제한도가 낮아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확률이 높음
 - 따라서 공제한도의 소폭 축소는 실질적인 소비 유인 효과나 행태변화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신용카드 소비는 이미 한도를 넘긴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경제적 유인이 추가 소비를 이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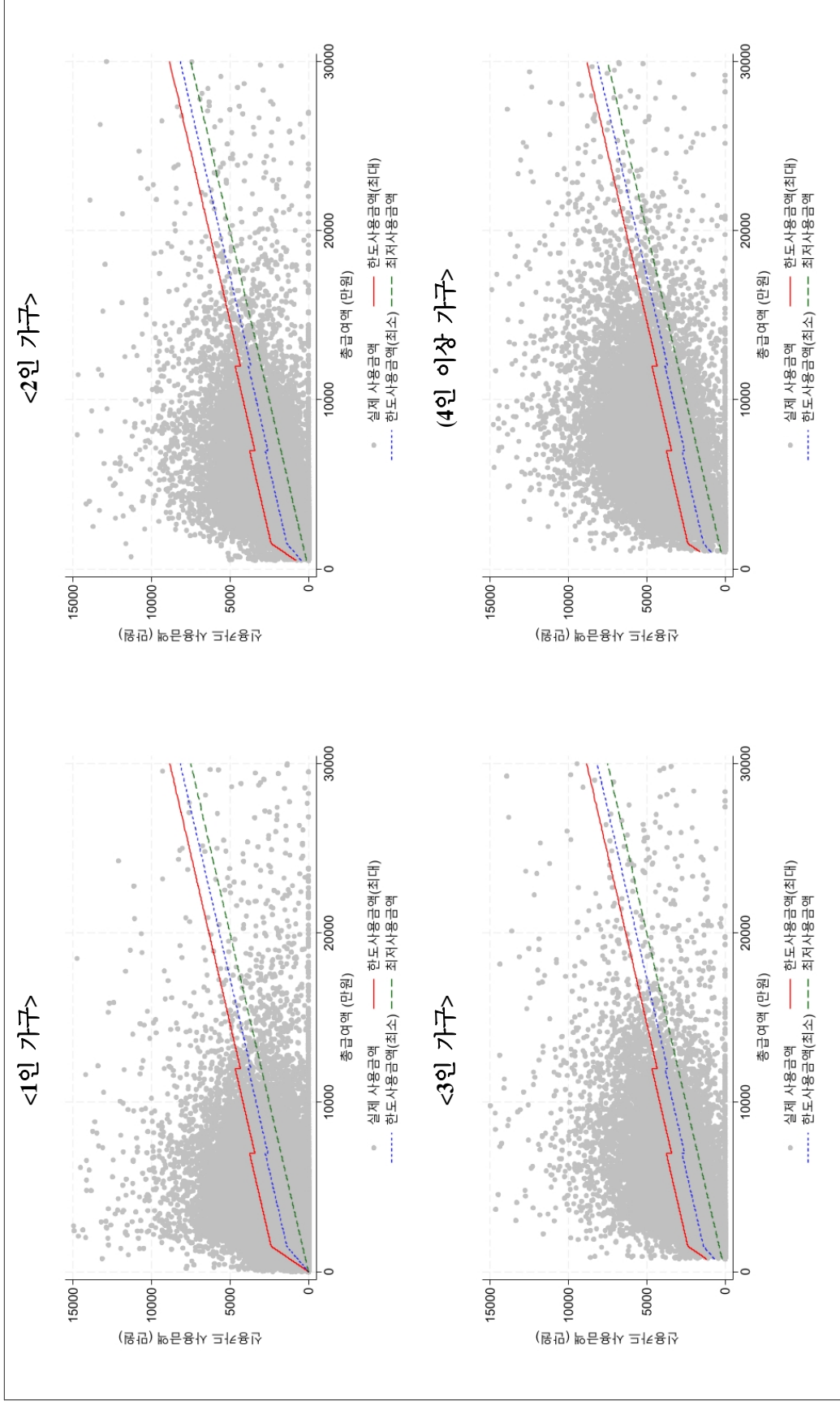
[그림 IV-1] 2019년과 202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선과 실제 사용금액 분포



자료: 국세청 데이터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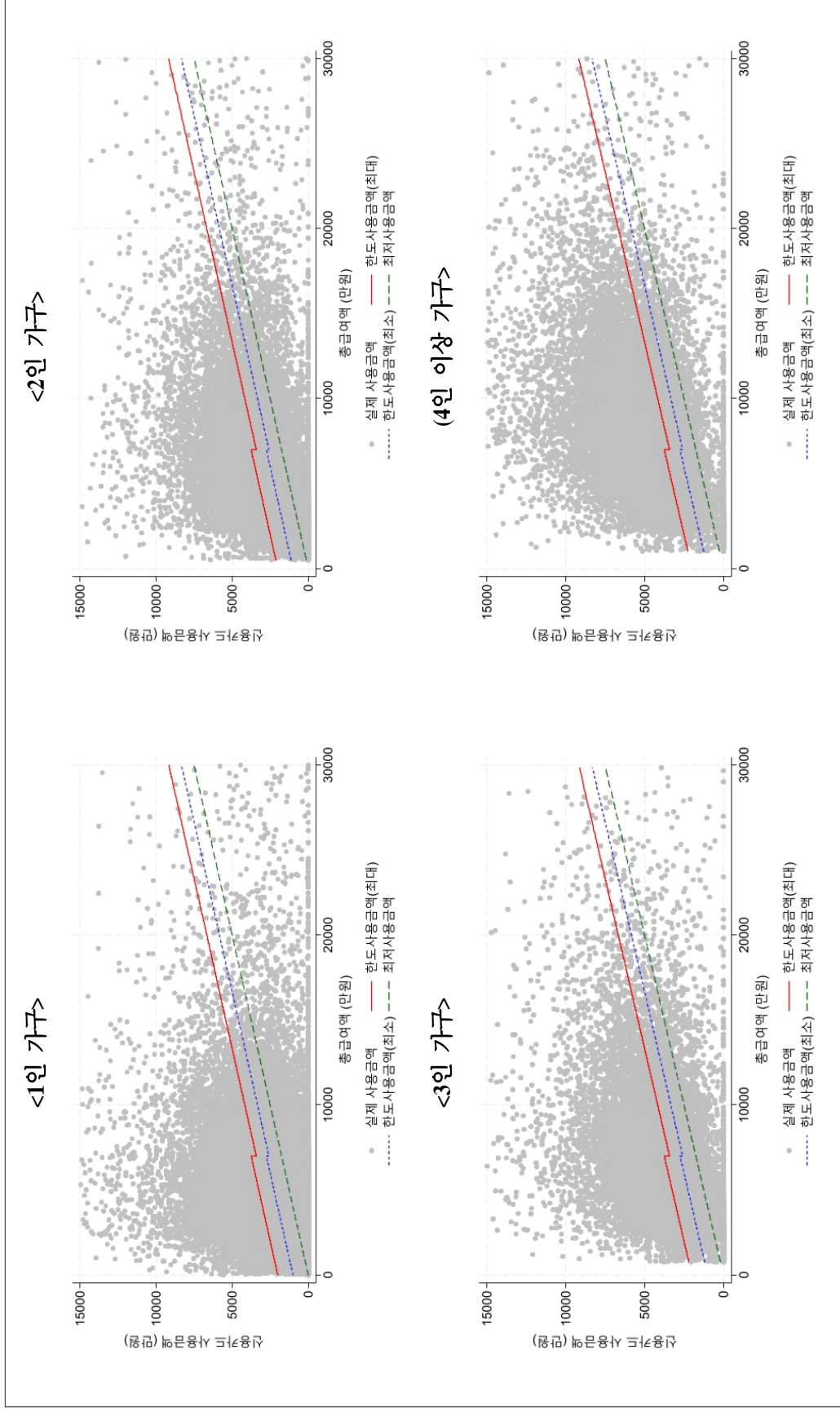
- 가구원이 많을수록 최저 사용금액 기준선 아래에 있는 납세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한도금액 위에 있는 납세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가구 규모가 생계비, 소비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 다만 최소 사용금액 또는 한도금액 인근에서는 제도 변화가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계량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2] 2019년 가구 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선과 실제 사용금액(국세청 데이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3] 202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선과 실제 사용금액(국세청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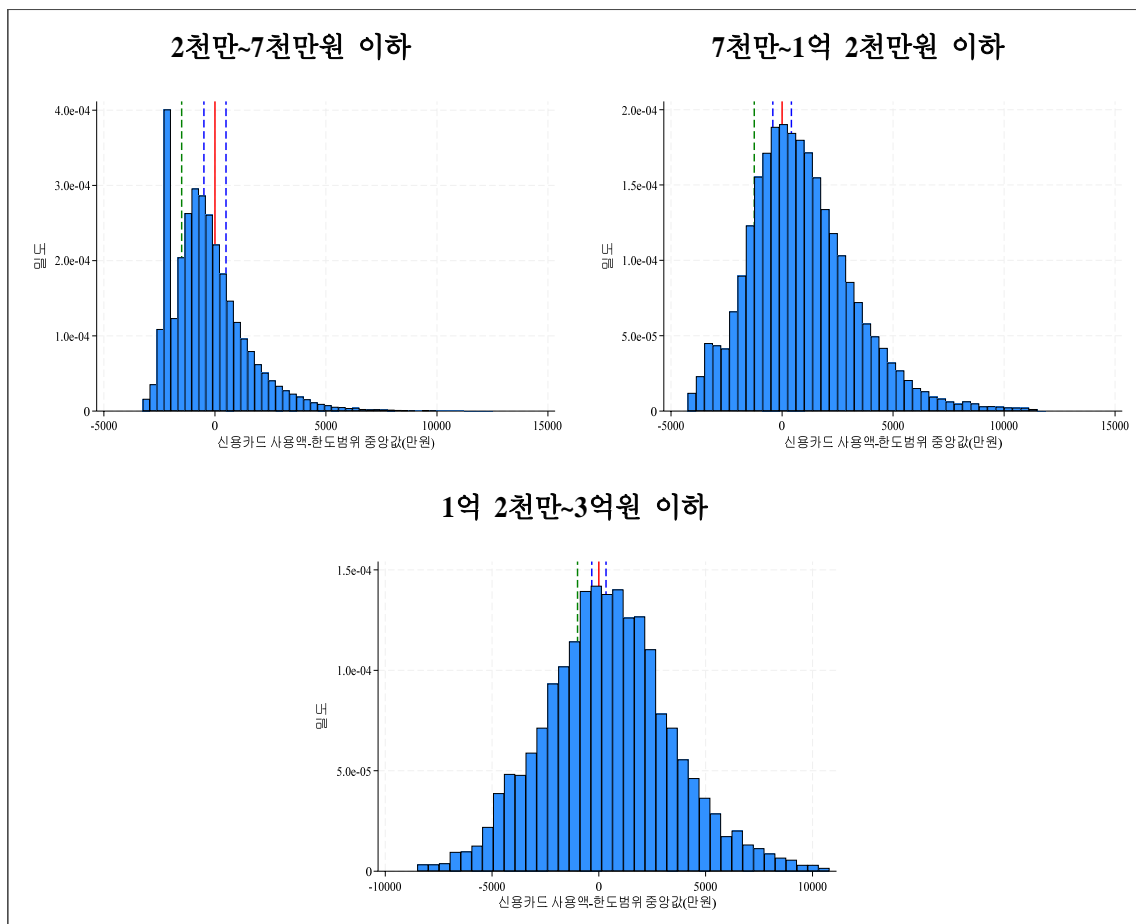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IV-4]는 2023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공제한도 기준선 간 차이의 분포를 보여줌
 - x 축은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최소 공제한도와 최대 공제한도의 중앙값 간의 차이를 의미함
 - x 축에서 0은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해당 중앙값과 동일함을 의미함
 - y 축은 해당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의 밀도(빈도 비중)를 나타냄
 - 파란색 점선은 공제율 15%와 30%를 각각 적용했을 때 공제한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 및 최소 사용금액을 나타내며, 이 두 기준금액의 중앙값이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됨
 - 초록색 점선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 요건인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최저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준선을 의미함
 - 2019년의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공제한도 기준선 간 차이 분포는 2023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2023년을 중심으로 논의함

- 소득 규모별로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 기준금액(최소·최대 공제 대상 사용금액의 중앙값)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의 비중이 높고,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2천만원~7천만원 이하) 이 구간은 분포의 중심이 0보다 왼쪽에 치우쳐 있으며, 특히 최저 사용요건선(초록색 점선)보다 낮은 영역에 납세자가 다수 분포함
 - 이는 해당 구간의 많은 납세자가 최저 사용요건(총급여의 25%)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제한도 조정에도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한편 히스토그램 막대의 최고 밀도는 이 최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초록색 점선보다 왼쪽, 즉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영역에 몰려 있음
 - 이는 전략적 조정의 결과(집군 현상)가 아니라, 단순히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낮아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이거나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이나 제약 조건(예: 가처분소득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7천만원~1억 2천만원 이하) 이 구간은 분포가 0 근처에 밀집되어 있으며, 최저 사용요건선과 공제 기준금액 중앙값(빨간색 실선) 사이에 납세자들이 집중되어 있음

- 이 구간의 납세자들은 공제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대상 집단으로 해석됨
- (1억 2천만~3억원 이하) 이 구간 역시 분포가 0 부근에 위치하나 7천만~1억 2천만 원 이하 구간보다 밀집도가 낮고, 공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 비중이 뚜렷하게 높음
- 이는 해당 구간의 다수 납세자가 이미 공제한도에 도달한 상태로, 공제한도 조정이 실제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함

[그림 IV-4] 2023년 소득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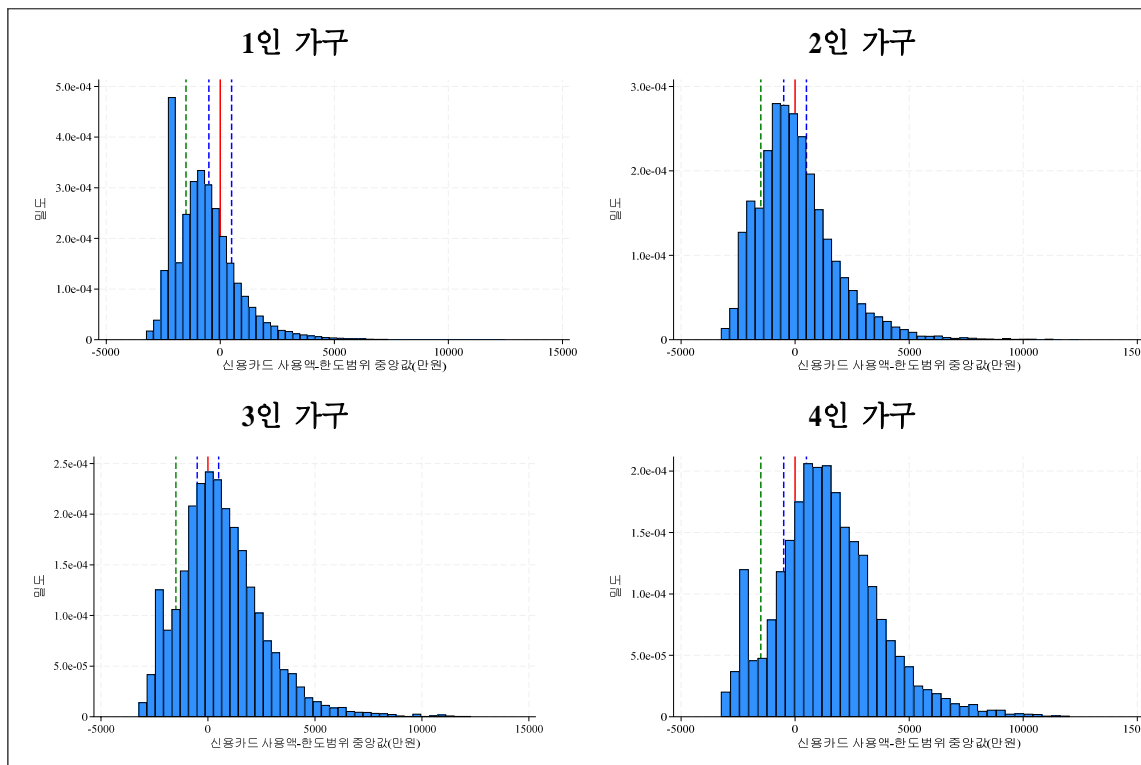
주: 2019년에서도 분포가 유사하게 관찰됨
 자료: 저자 작성

- 가구 규모가 증가할수록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최저 사용금액 기준선(초록색 점선) 미달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공제한도 중앙값 기준선(빨간색 점선)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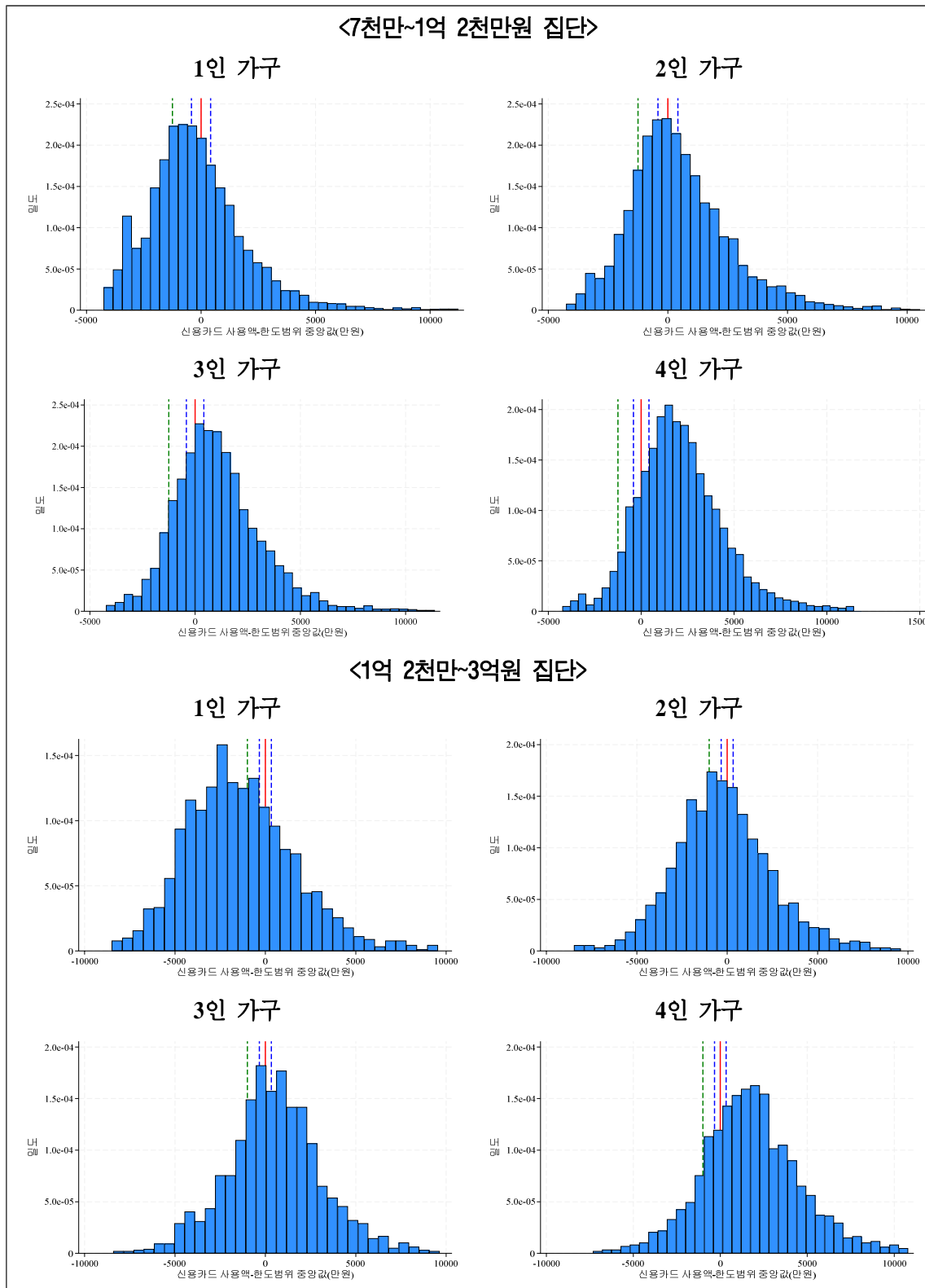
- 이는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생계비와 소비지출 규모가 함께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임
- 실제로 최저 사용금액 기준선(초록색 점선) 미만 구간에 분포하는 납세자는 1~2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공제한도 중앙값 기준선(빨간색 점선)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3인 이상 가구에서 납세자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러한 경향은 총급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며, 고소득 집단에서는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소비 확장이 더 강하게 나타나 공제한도 초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됨
- 특히 총급여 수준이 낮은 1인 가구에서는 최저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총급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4인 가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

[그림 IV-5] 2023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2천만~7천만원 집단



주: 2019년에서도 분포가 유사하게 관찰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6] 2023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7천만~1억 2천만원 집단과 1억 2천만~3억원 집단



주: 2019년에서도 분포가 유사하게 관찰됨
자료: 저자 작성

- 결과적으로 저소득·1인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고, 고소득·다인 가구의 경우 이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두 집단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화에 제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
 -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최저 신용카드 사용 기준액 인근에서 저소득·1인 가구에 신용카드 사용 증가 유인을 제공함
 - 또한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될 경우, 공제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한도액 인근에서 고소득·다인 가구에 신용카드 사용 증가 유인을 제공함
 - 그러나 공제한도가 하향 조정될 경우, 고소득·다인 가구는 생활 필수 지출 규모가 크고 소비의 경직성이 높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줄이지 못할 수 있음

- 한편 만약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치는 소비행태 변화는 유발하지 못했더라도 세제 혜택 축소를 통해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2017년과 2018년 중상위 및 고소득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소비행태에 미치는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하지만 이 소득계층의 공제혜택 축소는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즉 공제한도 축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

3.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양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7년과 2018년에 중상위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가 하향 조정됨

- 2017년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집단에 대해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 2018년에는 총급여액 7천만~1억 2천만원 집단에 대해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 2017년과 2018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고소득층 소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적 유인 감소가 고소득층의 신용카드 사용 감소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함
- 공제한도 축소가 고소득층의 신용카드 사용 행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소비 유인책으로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다른 한편으로 공제한도 축소로 인해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은 줄어든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여기서는 공제한도 축소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6절에서 지니계수 등을 활용해 살펴봄
 - 다만 다음의 분석 방법 및 자료에서 설명하겠지만, 2017년에 한도가 축소된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집단의 경우 분석을 위한 표본 수가 적어 2017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2018년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만 분석함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 본 연구는 사건연구 분석을 통해 2018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 본 연구 분석 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처치연도는 2018년으로 설정함
 -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에서는 해당 처치연도를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여 해당 연도를 0으로 표시하고, 그 이전·이후 연도는 각각 음수(-) 및 양수(+) 값으로 표시함

- 처치집단은 7,000만~9,500만원 이하 집단이고 대조집단은 4,500만~7,000만원 이하 집단임
 -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7천만원 기준으로 $\pm 2,500$ 만원에 해당하는 집단만을 고려함
 - 분석 기간 동안 항상 동일한 소득 구간에 있는 표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 한편 동 제도 변화 이전 연평균 기본공제 규모가 250만원 이상인 집단에 한정하여 공제한도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함
- 2017년에 1억 2천만원 초과 집단에 대한 공제한도가 축소되었으나, 자료 한계로 이 집단에 대한 사건연구 분석을 수행하지 못함
- 대조집단은 4,500만~7,000만원 이하 집단으로 설정하고, 처치집단은 1억 2,000만~1억 4,500만원 이하 집단으로 설정 가능함
 - 하지만 처치집단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항상 동일한 소득 구간에 있고, 동 제도 변화 이전 연평균 기본공제 규모가 200만원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수가 너무 작아 사건연구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음
- 본 연구는 사건연구 분석을 위해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함
- 이 신고자료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구축된 균형 패널자료임
 - 분석 조건에 만족하는 대조집단은 총 1,042명(80%)이고, 처치집단은 261명(20%)임
- 공제한도 축소 전후 모두 대조집단의 신용카드 평균 사용금액이 처치집단보다 낮게 유지됨
- 처치집단의 평균 사용액이 더 높은 이유의 일부는 총급여 수준이 대조집단보다 높아 카드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단순 평균 비교에서는 대조집단의 사용액 증가폭이 처치집단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기초 특성(소득·가구구성 등)의 불균형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
 - 공제한도 축소 후 양 집단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의 표준편차가 확대되어, 집단 내 소비 이질성이 더욱 증가한 양상이 관찰됨

<표 IV-5> 2018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전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변화

(단위: 명, 만원)

구분		공제한도 축소 전			공제한도 축소 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신용카드 사용금액	처치 집단	1,044	4,512	1,491	1,285	4,681	1,784
	통제 집단	4,032	3,619	1,310	5,040	4,158	1,840

자료: 저자 작성

□ 본 연구는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하여 2018년 7,000만~9,500만원 처치집단의 공제한도 축소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bigcirc \log Y_{it} = c + \sum_{k=-4}^{-2} \beta_k D^{(k)} + \sum_{k=0}^4 \beta_k D^{(k)} + X_{it}\gamma + m_i + t_t + \epsilon_{it} \quad \text{식 (1)}$$

- $\log Y$: 개인 i 의 연도 t 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로그변수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D_{it}^{(k)}$: 처치집단에 속한 개인 i 가 새로운 정책 시행 연도(2018년) 기준 k 년 전 또는 후 시점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기준연도 ($k=-1$)는 생략하여 기준 시점으로 설정함
- X_{it} : 연령, 연령의 제곱, 부양가족수, 가처분소득의 로그변수를 포함하는 설명변수 벡터
- m_i :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시간 불변 특성 변수
- t_t : 연도별 더미변수로 모든 개인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도별 충격이나 변화 요인을 통제하는 변수
- ϵ : 오차항

다. 분석 결과

□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공제 한도 축소 정책은 신용카드 사용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총급여 7,000만~9,500만원 처치 집단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효과를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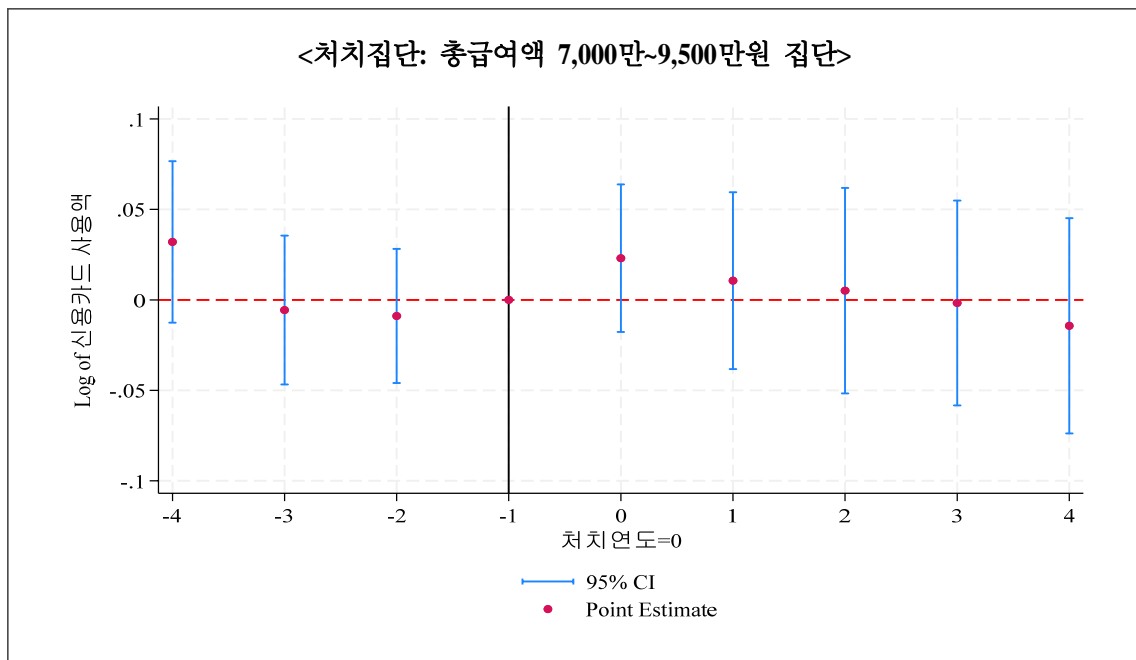
보면, 2018년 공제한도 축소 이후 처치집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음

- 이때 2018년 이전 시점에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신용카드 사용 변화 추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추세 가정이 성립함

□ 다른 설명변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나이(계수 = 0.0817, $p < 0.001$), 나이²(계수 = -0.0006416, $p < 0.001$)
 - 젊은 층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용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지만, 일정 연령 이후에는 사용 증가세가 완만해짐
- 가구원 수(계수 = 0.0319, $p < 0.001$)
 - 가구원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약 3.2%($\approx e^{0.0319} - 1$) 증가함
- 가처분소득의 로그변수(계수 = 0.4296, $p < 0.001$)
 - 가처분소득이 1% 증가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평균 약 0.43% 증가하는 탄력성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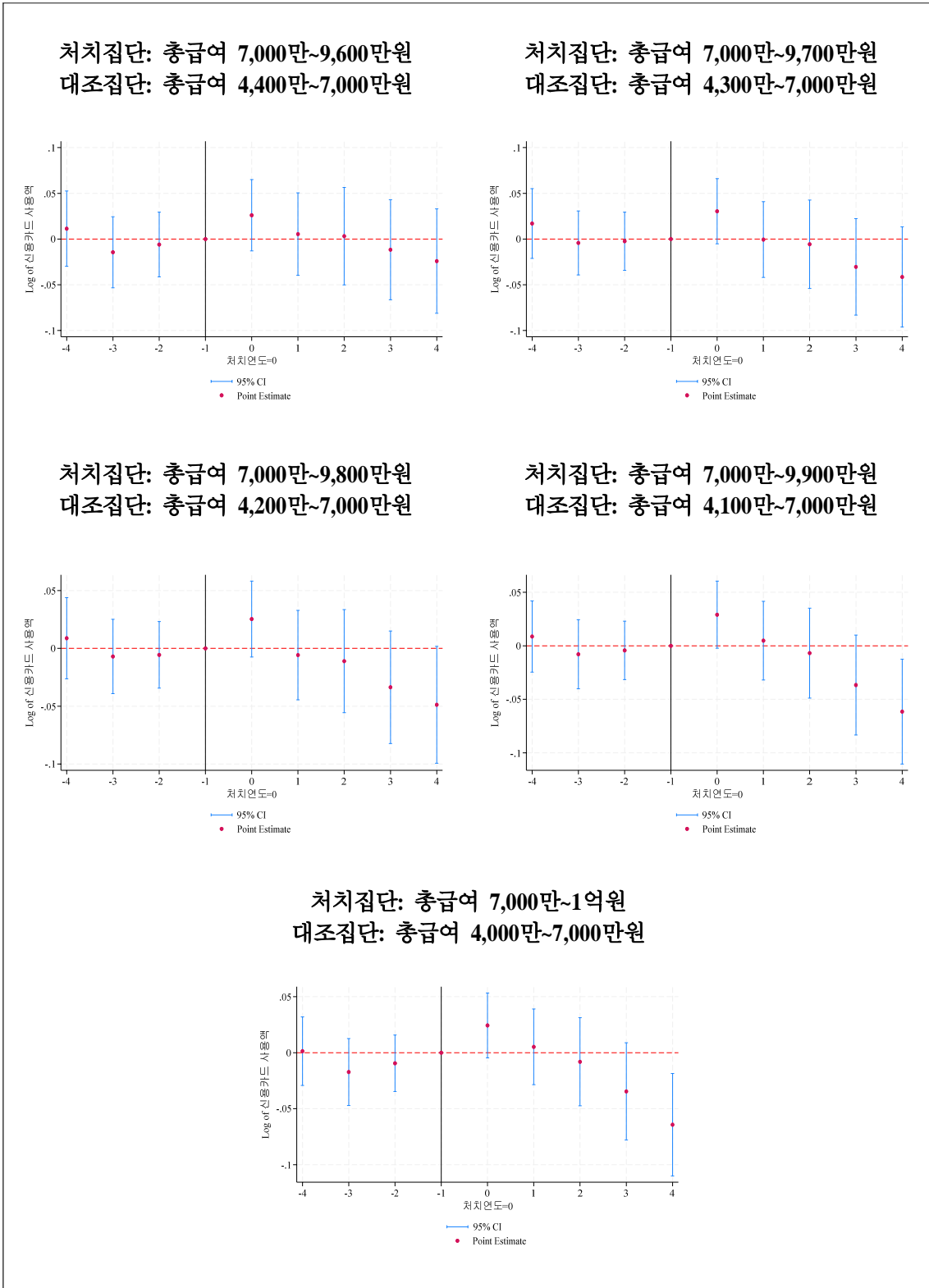
[그림 IV-7]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 본 연구는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범위를 조정하면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을 7천만원 기준으로 $\pm 2,600$ 만원, $\pm 2,700$ 만원, $\pm 2,800$ 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사건연구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됨([그림 IV-8] 참조)
 - 하지만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범위 기준을 $\pm 2,900$ 만원과 $\pm 3,000$ 만원으로 확대한 경우에는 공제한도 축소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는 공제한도 축소에 따른 소비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물가상승 등 외생적 충격을 온전히 통제하기 어려움
 - 외생적 충격의 영향이 지속될수록 추정편의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본 연구 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줌
 - 2018년에 시행된 공제한도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상위 소득계층(처치집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로 인해 중상위 소비계층의 소비 위축 우려가 크지 않음을 시사함
 - 즉 소득공제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제한도가 축소되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IV-8] 처치 및 대조집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자료: 저자 작성

4. 문화·체육 지출 지원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8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한정하여 책 구입·공연 관람비에 대해 추가공제 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대상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한도와 전통시장·대중교통 특별공제 한도에 더해 도서·공연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한도가 신설됨
 -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로 기본공제율보다 15%p 높음
 - 2022년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신문 구독료가 추가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됨

- 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문화·체육 분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관련 분야의 소비를 실제로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본 제도의 정책목적은 다음과 같음
 - 도서·공연·영화·스포츠 관람 등 국민의 문화·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세대·계층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여력이 낮은 계층의 문화·체육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 분야의 소비 확대는 특정 분야를 타깃하여 내수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 2018년 도입된 문화·체육 분야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관련 분야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을 수행함
 -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체육 부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를 추정함
 -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에는 본 연구의 대조집단인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집단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정보가 포함되지 않음

-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재정패널은 2014~2022년 기간 비균형 패널자료이며, 2018년 전과 후에 모두 관찰된 표본만 분석에서 사용함
- 처치집단은 총급여액 4,500만~7,000만원 이하 집단이며, 대조집단은 7,000만~9,500만원 이하 집단임
 - 사전추세 가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효과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7천만원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가까운 소득 구간(±2,500만원)을 선택함

□ 본 연구는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하여 문화·체육 지출 지원 효과를 추정함

- $$\log Y_{it} = c + \sum_{k=-4}^{-2} \beta_k D^k + \sum_{k=0}^4 \beta_k D^k + X_{it}\gamma + m_i + t_t + \epsilon_{it}$$
 - $\log Y$: 개인 i 의 연도 t 에서의 문화생활비의 로그변수
 - D_{it}^k : 처치집단에 속한 개인 i 가 이벤트 연도(2018년) 기준 k 년 전 또는 후 시점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기준연도 ($k=-1$)는 생략하여 기준 시점으로 설정함
 - X_{it} : 연령, 연령의 제곱, 가구원 수, 가구소득의 로그변수를 포함하는 설명변수
 - m_i :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시간 불변 특성 변수
 - t_t : 연도별 더미변수로 모든 개인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도별 충격이나 변화 요인을 통제하는 변수
 - ϵ : 오차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가구주를 대표 관측치로 사용함

□ 재정패널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항목을 사용하여 문화생활비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 있는 항목에 대한 문화생활비만 사용함

- [그림 IV-9]에 제시된 8개 항목 중 1) 서적, 음반, DVD 등 구입 및 대여료와 3) 박물관, 공연, 영화, 스포츠 관람료 등 2개 항목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문화생활비로 고려함
 - 이 분석에서 활용한 문화생활비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은 포함되지 않음

[그림 IV-9] 재정패널 설문조사 문화생활비 지출액 설문문항

h1. 작년 한 해 동안 귀 가구가 지출한 문화생활비는 총 얼마입니까?

항목	(1) 지출 여부	(2) 금액(만원)	(3) 연간 방문/구입 횟수(회)
1) 서적, 음반, DVD 등 구입 및 대여료	① 예 ② 아니오 h_ch001 01~16	h_ch002 01~16	
2) OTT서비스 구독 비용	① 예 ② 아니오 h_ch027 15~16	h_ch028 15~16	
3) 박물관, 공연, 영화, 스포츠 관람료 등	① 예 ② 아니오 h_ch003 01~16	h_ch004 01~16	h_ch014 06~16
4) 경륜, 경정, 경마권 구입료	① 예 ② 아니오 h_ch005 01~16	h_ch006 01~16	h_ch007 01~16
5) 복권 구입	① 예 ② 아니오 h_ch008 01~16	h_ch009 01~16	h_ch015 06~16
6) 신문/잡지 정기 구독료	① 예 ② 아니오 h_ch010 01~16	h_ch011 01~16	
7) 체육·음악·문화 활동비	① 예 ② 아니오 h_ch012 05~16	h_ch013 05~16	
① 체육활동비 (수강료, 동호회비 등)	① 예 ② 아니오 h_ch021 10~16	h_ch022 10~16	
② 음악·문화 활동비 (수강료, 동호회비 등)	① 예 ② 아니오 h_ch023 10~16	h_ch024 10~16	
8) 반려동물 관련 비용	① 예 ② 아니오 h_ch025 10~16	h_ch026 10~16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6차년도 재정패널 통합 설문지: 가구용』, 2024. 12.

-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모두 제도 도입 후 문화생활비 지출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처치집단의 증가폭이 대조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사건연구 분석을 통해 사전추세 보정 후에도 처치집단의 문화생활비 지출액 증가가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대조집단의 경우 분산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 외 다른 요인(코로나19, 물가상승 등)의 영향이 처치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표 IV-6> 2018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전후의 문화생활비 지출액 변화
(단위: 명, 만원)

구분		제도 도입 전			제도 도입 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문화 생활비	처치 집단	829	56.9	65.8	597	59.6	61.9
	통제 집단	320	59.4	51.7	459	61.5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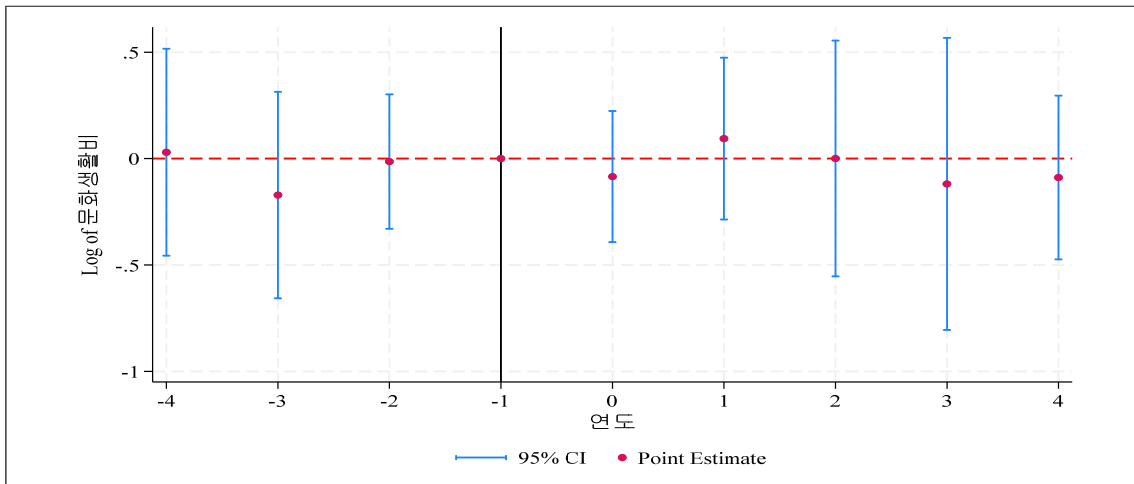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 분석 결과

- 2018년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이후 처치집단(총급여액 4,500만~7,000만원 이하 집단)의 문화생활비 수준은 대조집단(총급여액 7,000만~9,500만원 이하 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음
 - 문화생활비는 정책 시행 1년($t=1$) 후 일시적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정책 시행 2년($t=2$) 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추정치는 0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이때 2018년 정책 도입 이전에는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간 문화생활비 추세에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추세 가정이 성립함
 -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한다는 것은 해당 시점에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 다른 설명변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음
 - 나이(계수 = 0.0977, $p = 0.085$), 나이²(계수 = -0.00109, $p = 0.063$)
 - 중장년층까지는 문화생활비 지출액이 증가하다가 노년층에서는 정체 또는 감소함을 시사함
 - p 값은 0.063으로 10% 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 가구원 수(계수 = 0.1287, $p = 0.025$)
 - 가구원 수 1명 늘어나면 문화생활비 지출액이 13.7% 증가하며, 이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가족 단위 문화소비(공연, 영화 등)가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함
 - 가구소득의 로그변수(계수 = 0.2788, $p = 0.009$)
 -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 문화생활비 지출액은 약 0.28% 증가함

[그림 IV-10]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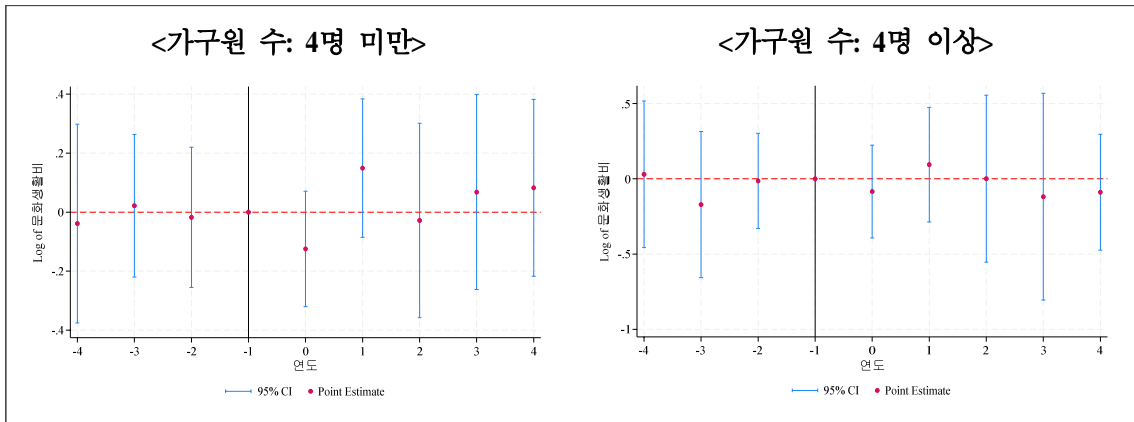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문화생활비 지출은 가구 구성의 특성에 따라 소비 패턴과 정책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문화생활비 지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
 - 가구원 수 4명 미만과 가구원 수 4명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건연구 분석을 실시함
 - 자녀가 있는 다인 가구의 경우 가족 단위의 공연·영화 관람, 스포츠 경기 참여 등 문화·여가 소비 기회가 많고 사용 금액도 클 가능성이 높음
 - 반면 1인 가구나 고령 단독가구는 문화활동 참여 빈도 자체가 낮거나 제한될 수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민감도는 높되 실제 소비 금액은 낮게 유지될 수 있음

- 가구원 수에 따라 사건연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가구(4명 미만)와 대규모 가구(4명 이상) 모두 정책 도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비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이는 가구 규모가 문화지출 수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더라도, 정책 반응의 크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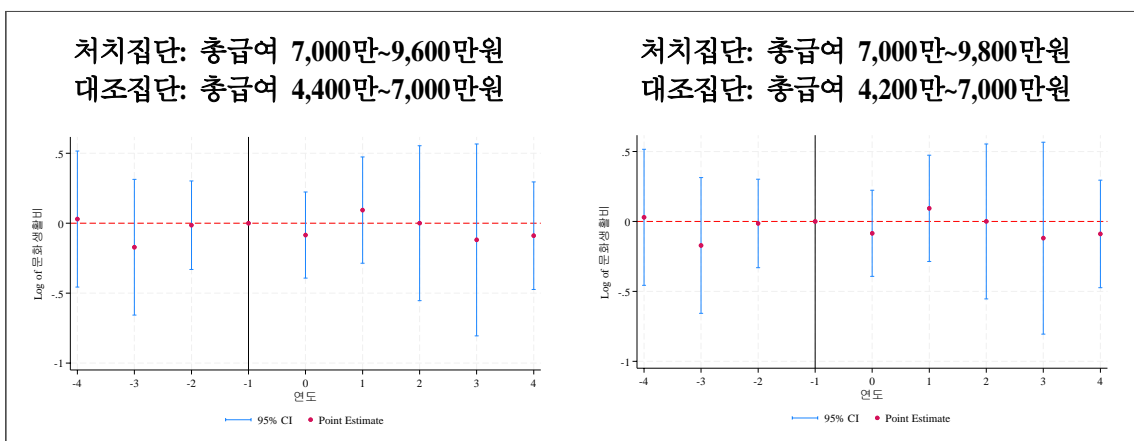
[그림 IV-11]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효과:
가구원 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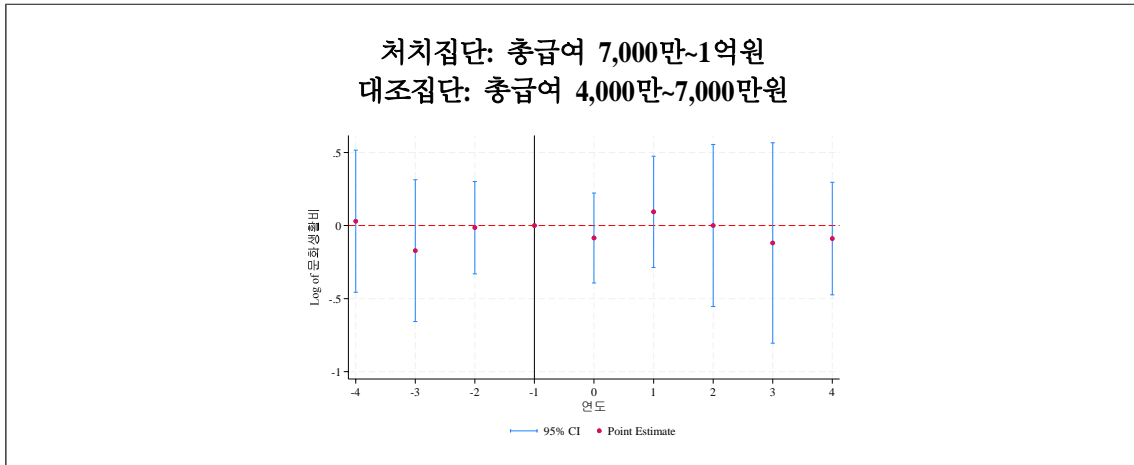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본 연구는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범위를 조정하면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을 7천만원 기준으로 $\pm 2,600$ 만원, $\pm 2,800$ 만원, $\pm 3,000$ 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사건연구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됨([그림 IV-12] 참조)
 - 모든 그래프에서 제도 도입 이후 처치집단에 대한 문화생활비 지출액이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음
 - 즉 정책 도입 이후 관련 분야에 대한 단기적 소비 증가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이는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추정계수와 신뢰구간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정책에 대한 처치효과는 소득구간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그림 IV-12]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효과:
총급여액 범위에 대한 민감도 분석



[그림 IV-12]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5. 2021~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율 추가공제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귀속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추가 소득공제를 시행함
 - 이 제도는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임
 - 2023년 귀속분부터는 소비 진작을 위한 해당 추가공제 규정이 일몰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202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공제 제도가 다시 한시적으로 재도입됨
 -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05% 초과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추가공제함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임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가계 소비와 민간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한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실질적 소비 촉진을 유도함

- 소비 실적 기반 인센티브로 행태적 소비를 유도함
 - 조건부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에 집중적으로 지원함
- 본 연구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에 따른 추가공제 도입 이후 공제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소비가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함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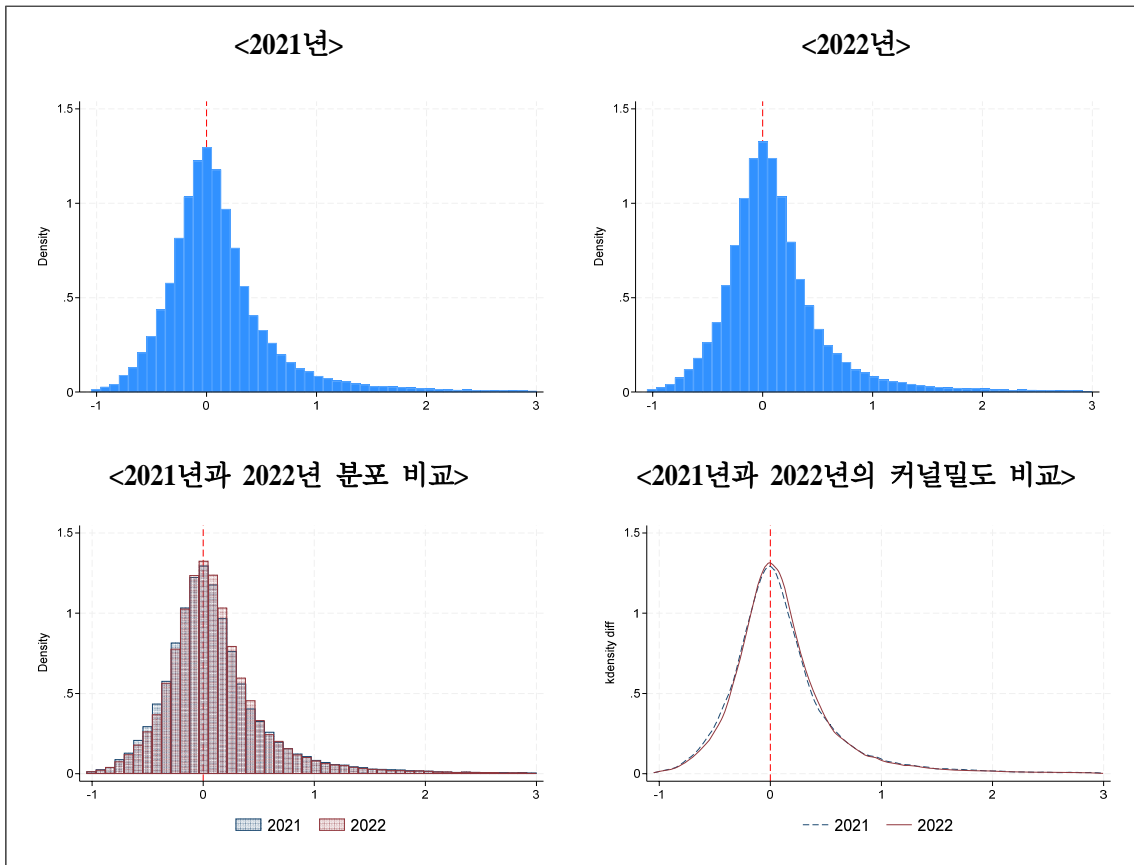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집군(bunching)과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을 수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정책이 가구 소비를 얼마나 촉진시켰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정함
- (집군 분석) 전년 대비 5% 초과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을 정책상 기준점(kink)으로 설정하여, 이 구간에서 소비자 행태의 집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봄
 - 분석에는 2021년과 2022년 반복 횡단면 국세청 신고자료를 사용함
 - 2024년에도 추가공제제도가 재도입되었으나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2024년을 분석대상 기간에서 제외함
 - (사건연구 분석)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도적 특징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자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자영업자를 대조집단으로 설정하여 사건연구 분석을 실시함
 - 분석에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함
 - 2021년과 2022년을 정책의 처치(treatment) 시점으로 간주하고, 이 시점 전후 기간에 걸쳐 근로소득자(처치집단)과 자영업자(대조집단)의 총지출 추세 변화를 비교 분석함

1) 집군 분석

- 전 연도 대비 신용카드 등 초과 사용액의 5%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실제 사용액 증감액과 기준점 간의 차이를 분포로 그린 결과, 기준점 근처에서 밀집되는 집군 현상은 관찰되지 않음

- 2021년과 2022년 모두 정책 기준점(5%)을 초과하지 못한 가구가 작지 않고, 특정 구간에 집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 2022년에는 분포 자체가 2021년의 경우보다 다소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기준점을 초과한 가구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이동이 크지 않으므로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임
- 분포 분석 결과,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준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전략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경제적 유인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13] 정책 기준점(5%) 대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 변화율 차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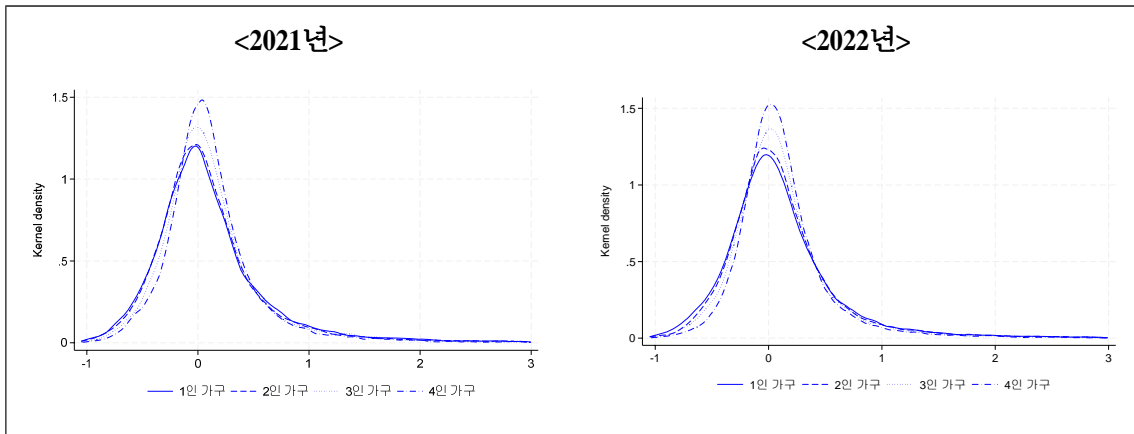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정책 기준점(5%) 대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 변화율 차이에 대한 커널밀도를 살펴보면, 가구 규모가 클수록 기준점(5% 초과) 근처에 더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4인 가구는 1인 가구에 비해 기준점을 중심으로 다소 우측으로 치우쳤지만 기준점 근처에서 뚜렷한 집군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음

- 전체적으로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분포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소득 규모가 낮을수록 기준점을 기준으로 더 넓게 퍼져 있음
- 만약 집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기준점을 경계로 직후 구간에서 빈도가 급등하는 봉우리(spike)와 직전 구간에서 급락하는 절벽(notch)이 동시에 나타나야 하며, 그 결과 분포 곡선의 기울기가 뚜렷하게 달라야 함

[그림 IV-14] 가구 규모별 정책 기준점(5%) 대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 변화율 차이 분포



자료: 저자 작성

- 본 연구는 좀 더 면밀하게 집군 분석을 하기 위해 제도 이해(정보 마찰), 신용 한도 제약 등으로 인해 정책 외적 마찰(friction)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정책 기준점(5%) 대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 변화율 차이 분포를 다시 추정하여 집군 현상을 추정함
 - 마찰로 인한 왜곡을 제거하면 정책 기준점에서 실제 납세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행동 반응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
 - Bertanha et al.(2021)이 제안한 누적분포함수(CDF) 필터링 방식 및 중간 검열 Tobit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 기준점 주변의 행동반응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여 탄력성을 추정함
- 분석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준선형 형태의 효용을 극대화함

$$\log Y_i = \begin{cases} \epsilon s_0 + n_i & \text{if } n_i < k - \epsilon s_0 \\ k, & \text{if } k - \epsilon s_0 \leq n_i < k - \epsilon s_1 \\ \epsilon s_1 + n_i & \text{if } n_i > k - \epsilon s_1 \end{cases}$$

- $s_0 = \log(1 - t_0) = 0$, $s_1 = \log(1 - t_1) = \log(1 - t_0 \times c)$
 - t_0 는 소득공제 이전 한계세율을, t_1 은 소득공제 이후 한계세율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공제 이전 한계세율에 공제율 c 를 곱하여 산출함
- ϵ 는 가격 탄력성을 의미함
- 집균 분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조 및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도 적용 이후의 가격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함
- 준선형 효용함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가격 변화와 신용카드 사용액 간의 관계를 추정할 때 소득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대체효과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집균 현상을 이용한 탄력성을 추정할 때 소득공제에 의한 행태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줌

- 집균 분석에서는 2020~2022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납세자 기준 패널 자료임
 - 직전연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2020~2022년 모두 연속적으로 관측된 납세자에 한해 분석을 수행함
 - 신용카드 사용액이 0인 납세자도 분석에서 제외함
 - 분석 대상 납세자는 총 78,353명임

2) 사건연구 분석: 소비 진작 효과

-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에 대한 정책효과를 추정함
 - 재정패널 설문조사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대조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에는 총 지출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재정패널 설문조사에는 총 지출 자료를 다양한 항목으로 구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2년 까지의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재정패널에서 최소 네 번 이상 관측된 개인만을 표본에 포함함

- 2021년 정책 시행 전과 후에 모두 관찰된 개인만 분석에 사용함
 - 2021년 전에 최소 두 번 이상 관찰되고 2021년 이후 모두 관찰된 개인만 분석에 사용함
 -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이 0이거나 결측치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가구주를 대표 관측치로 사용함
- 본 연구의 처치 기간은 2021년 이후이며, 처치집단은 근로소득자이고 대조집단은 자영업자임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대조집단)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총지출도 동반 감소할 수 있어, 사건연구 방법으로 추정된 정책효과 추정치가 과대 편향될 우려가 존재함
 - 코로나19의 외생적 충격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① 지출 변동성이 큰 표본을 제외하고 ② 2020년을 분석 기간에서 제외함
 - 연도별 총 지출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CV)를 계산하고, CV가 30%를 초과하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함
 - 고소득 자영업자 표본이 많지 않아 7천만원 이하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에서 총지출에는 기부금, 민간보험료,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음
- 가계의 일상적 소비 동향을 고려하기 위해 기부금과 미래 위험 대비 성격이 강한 보험료를 총지출 항목에서 제외함
-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모두 총지출액은 감소하였으며 처치집단의 감소폭이 대조집단보다 더 큼
- 이는 2021~2022년 도입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가 총지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처치집단 내 소비 편차(표준편차)가 확대된 것은 일부 가구만 제도에 반응했거나 외부적 요인(물가 상승 등)이 이질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을 의미함

〈표 IV-7〉 2021년과 2022년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도입 전후의
총 지출액 변화

(단위: 명, 만원)

구분		제도 도입 전			제도 도입 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총 지출액	처치 집단	2,318	2,791.5	1,492.9	1,108	2,695.9	1,611.2
	통제 집단	1,056	3,001.0	1,875.2	596	2,942.8	1,824.6

자료: 저자 작성

□ 본 연구는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총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

$$\bigcirc \log Y_{it} = c + \sum_{k=-4}^{-2} \beta_k D^{(k)} + \sum_{k=0}^1 \beta_k D^{(k)} + X_{it}\gamma + m_i + t_t + \epsilon_{it}$$

- $\log Y$: 개인 i 의 연도 t 에서의 가구 총지출 로그변수임
- D_{it}^k : 처치집단에 속한 개인 i 가 이벤트 연도(2021년) 기준 k 년 전 또는 후 시점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이때 기준연도는 $k=-1$ 에 대한 더미변수임
- X_{it} : 연령, 연령의 제곱, 가구원 수, 가구소득의 로그변수를 포함하는 설명변수
- m_i :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시간불변 특성 변수
- t_t : 연도별 더미변수로 모든 개인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도별 충격이나 변화 요인을 통제하는 변수
- ϵ : 오차항

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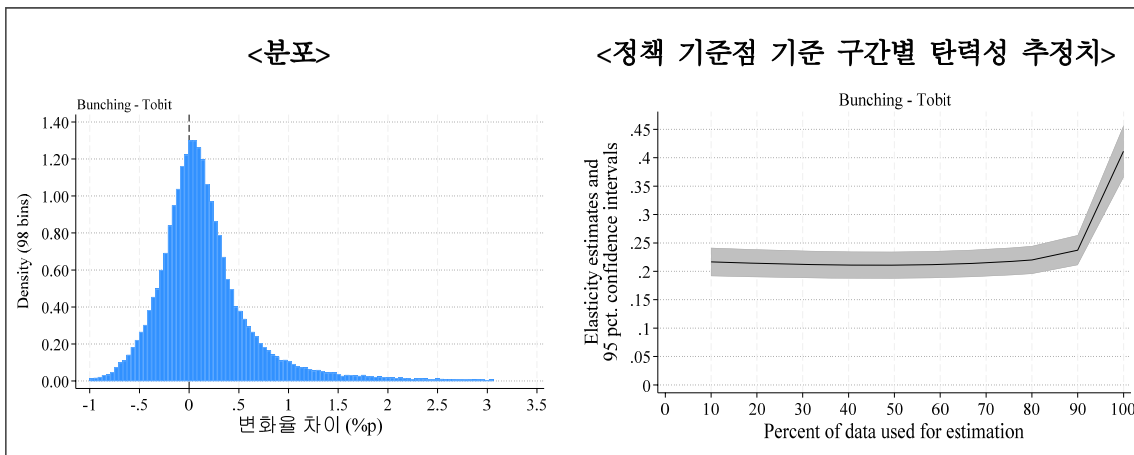
1) 집군 분석

- 2021년 집군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외적 마찰을 고려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집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 최빈 구간이 정책 기준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점 직전에서 밀도가 급격히

급락하는 절벽(notch)과 직후에서 과잉 밀도로 솟구치는 봉우리(spike)가 관찰되지 않음

- 정책 기준점 주변에서 시각적으로도 단절점이 관찰되지 않음
- 또한 기준점 주변 데이터 사용률을 100%에서 10%까지 순차적으로 축소하면서 Tobit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탄력성 추정치는 0.21에서 0.23 범위에서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사용률을 줄여도 급격한 단절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 추정되고 있어 의미 있는 집근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그림 IV-15] 2021년 집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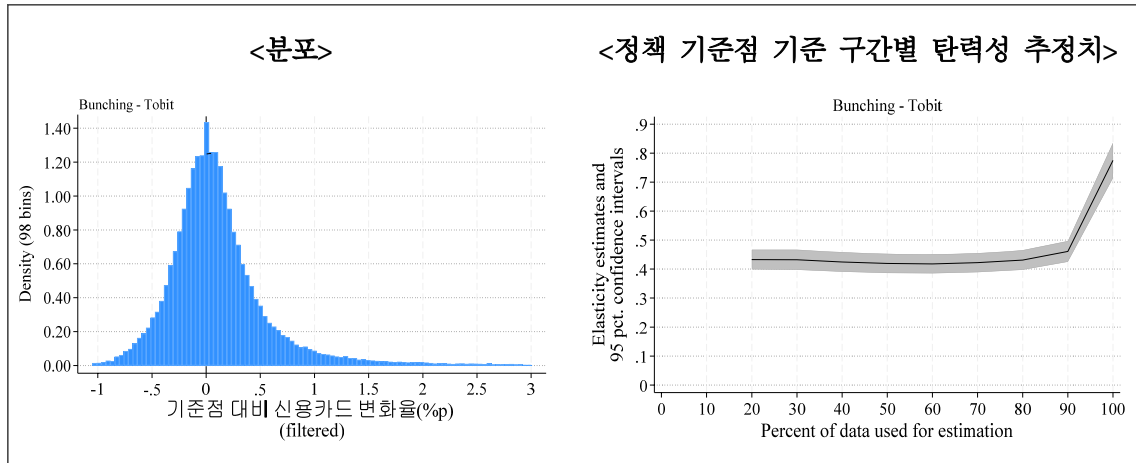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2022년의 경우에도 2021년과 마찬가지로 정책 기준점(5%) 근처에서 집근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 2022년에서도 최빈 구간이 정책 기준점으로 나타나지만, 기준점 직전과 직후에 각각 절벽(notch)과 봉우리(spike)가 관찰되지 않음
 - 현재 히스토그램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책 기준점 0%p 부근에 최빈값이 위치해 있으나, 이것을 절벽과 봉우리로 대표되는 불연속적인 질량 이동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탄력성 추정치는 기준점 주변 데이터 사용률 20%에서 90%까지 탄력성이 0.42에서 0.46 범위에서 평탄하게 유지되며, 이는 정책 기준점에서 집근 현상이 없음을 시사함

- 데이터 사용률 10%에 대해서는 탄력성이 추정되지 않음
- 2022년에서도 탄력성 추정치는 비탄력적으로 추정되고 있어 의미 있는 집군 현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그림 IV-16] 2022년 집군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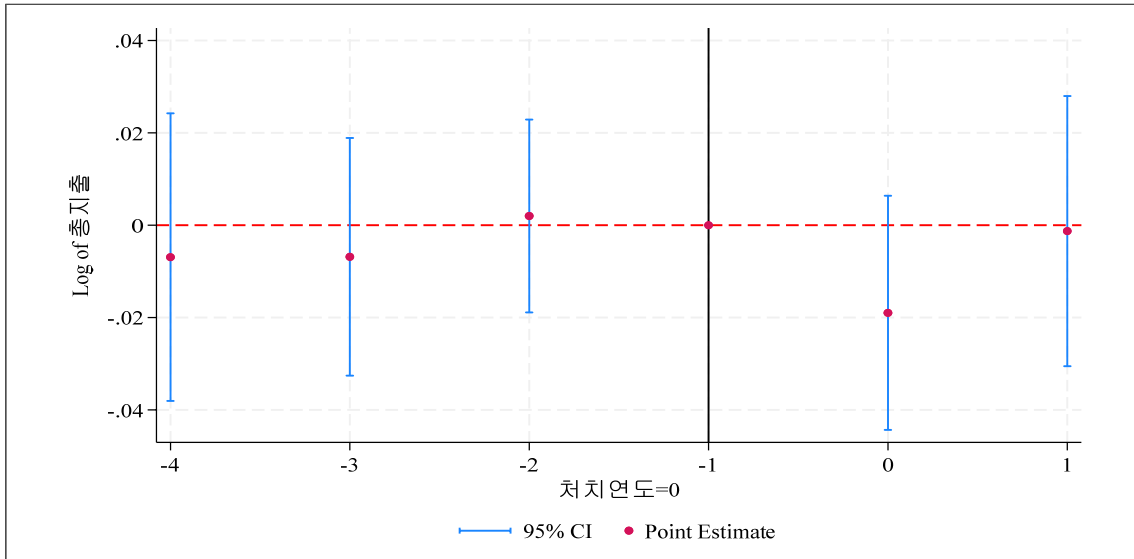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집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율을 정확히 5%로 맞추는 전략적 행동이 관찰되지 않음

2) 사건연구 분석: 소비 진작 효과

- 사건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시행 시점인 2021년($t=0$)과 2022년($t=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총지출 증가 효과가 없었음
 - 추가 소득공제 시행 이전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총지출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전 추세 가정이 성립함
 - 모든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음
 - 추가 소득공제의 효과 추정치는 거의 0에 가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소득 7천만원 이하 집단에 대해 추가공제제도 도입 이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총지출 변화 수준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그림 IV-17] 사건연구 분석 결과: 총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의 정책효과



자료: 저자 작성

- 사건연구 분석 결과,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지출을 증가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는 동 제도의 소비 유인 효과가 미미함을 시사함

6.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 본 분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소득계층 간 실질 세부담에 미치는 분배적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제도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지 또는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함
 -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세부담 측면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 하지만 2017년부터 중상위 및 고소득자에 대한 한도가 축소되면서 소득공제의 역진적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국세청 과세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소득수준별 세부담 경감 수준을 파악하여 소득재분배 분석을 수행함

- 소득공제는 세제혜택 규모가 한계세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 경감효과가 클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 예컨대 2017년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인 고소득자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8년에는 총급여 7천만~1억 2천만원 구간의 근로자에 대해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문화비 지출 항목은 계속 확대됨
 - 즉 2018년 도입 초기에는 도서·공연비만 허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됨
- 이러한 제도적 특징 및 개편은 소득분배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중상위·고소득층에 대한 공제 축소와 중하위·저소득층에 대한 공제 확대는 소득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지니계수,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하위 40% 점유율, 상위 10% 점유율 지표를 사용함
 -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로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에 가깝고,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에 가까움
 - 10분위 배율과 5분위 배율은 분위배율 지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분포 극단 간 격차를 직접 수치화하여, 지니계수가 민감하지 않은 상하위 극단의 변화를 보는 데 유리함
 - 하위 40% 점유율과 상위 10% 점유율은 각각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분배 전체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위치를 보여줌
- 본 분석은 국세청 근로소득세 횡단면 자료를 활용함

-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도별 횡단면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 하위 40% 분배율(%), 상위 10% 분배율(%)을 추정하고, 연도별로 제도 변화에 따라 각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
- 근로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는 매년 과세 신고 대상 근로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출되므로, 해당 연도 모집단의 소득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 수준의 소득 재분배 지표를 추정할 수 있음

1) 지니계수

□ 본 연구는 Jenkins(1999)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지니계수를 로렌츠 곡선과 완전 평등선(45°선) 사이 면적의 두 배를 이용해 계산함

- 이 방법은 소득변수 Y 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정렬된 소득값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누적가중인구비율(p_i)과 누적가중소득비율(L_i) 사이의 구간별 면적을 삼각형으로 근사하여 전체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 B 를 계산한 뒤, $G=1-2B$ 의 관계식을 통해 지니계수를 도출함

$$- B = \sum_{i=1}^{n-1} (L_i + L_{i+1})(p_{i+1} - p_i) / 2 \quad \text{식 (3)}$$

- 이 분석 방법을 일반적으로 면적 근사 기반 추정법(Lorenz curve area approximation method)이라 함

□ 본 연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전과 후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여 제도로 인한 소득불평등 개선 정도를 살펴봄

- 지니계수 차이($\Delta G = G_{before} - G_{after}$)가 0보다 크면, 공제 적용 후 불평등(지니계수)이 완화된 것을 의미하며, 0보다 작으면 공제 적용 후 불평등이 악화된 것을 의미함

2) 분위배율 및 점유율

□ 본 연구는 분위배율 지표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5분위 배율과 10분위 배율을 추정함

- 10분위 배율은 전체 인구를 소득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10등분(10분위)한 뒤, 각 분위에 포함된 개인들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상위 10% 분위 평균 소득 ÷ 하위 10% 분위 평균 소득으로 산출함
 - 5분위 배율은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인구를 5등분(5분위)하여 상위 20% 분위 평균 소득 ÷ 하위 20% 분위 평균 소득으로 산출함
- 본 연구는 점유율 지표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하위 40% 점유율과 상위 10% 점유율 추정함
- 하위 40% 점유율은 표본에서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의 합이 표본 전체 소득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상위 10% 점유율은 표본에서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의 합이 표본 전체 소득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본 연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과를 고려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 전과 후의 소득을 사용하여 분위배율 및 점유율 지표를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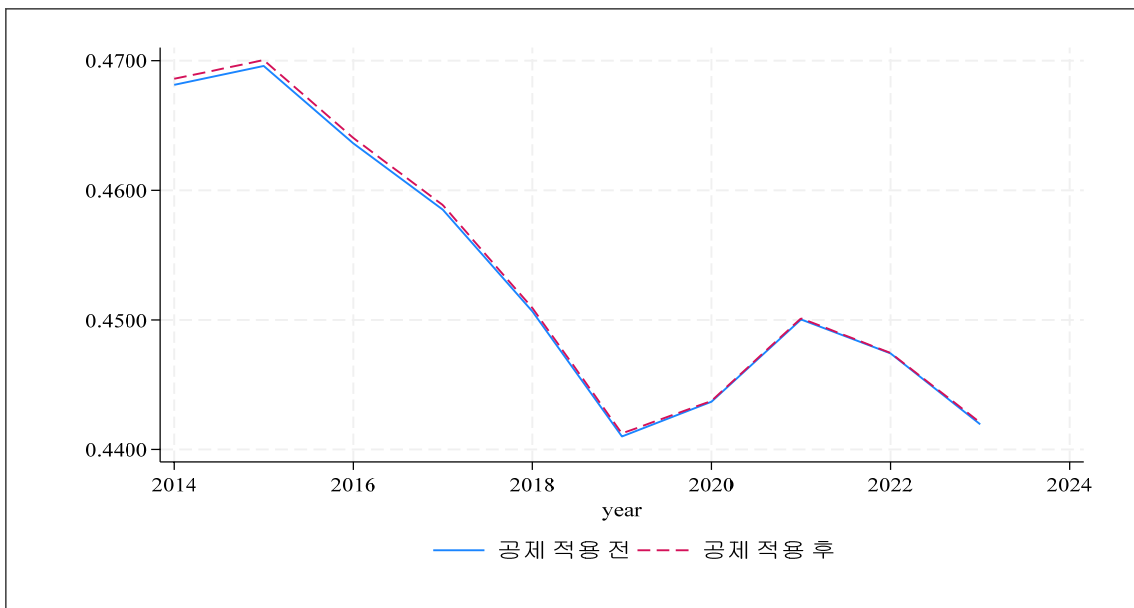
다. 분석 결과

1) 지니계수

- 지니계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후 지니계수가 적용 전보다 소폭 높게 추정되어 본 공제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소폭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지니계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2019년까지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며 소득불평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지니계수가 상승하여 불평등 수준이 다소 악화되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후 2022년부터 지니계수는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며,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전후의 지니계수 차이는 양(+)의 값을 가지며, 이는 본 소득공제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함을 시사함
- 그러나 소득공제 적용 전과 후의 지니계수 차이가 전반적으로 매우 작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4년에는 소득공제 적용 후 지니계수가 0.1%(0.0005) 상승하였으나, 2023년에는 0.03%(0.0002) 상승함
 - 2022년에는 지니계수 변화가 거의 없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동일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고소득자가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였으나, 2017년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축소되면서 공제 적용 전후의 지니계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동일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킴
 - 그러나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조정을 통해 이러한 소득불평등 효과를 완화시킴

[그림 IV-18]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전과 후의 지니계수 추이



자료: 저자 작성

<표 IV-8>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전후 지니계수 추이

과세 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 지니계수	신용카드 소득공제 후 지니계수	지니계수 변화	증감율(%)
	A	B	B-A	(B-A/A)×100
2014	0.4681	0.4686	0.0005	0.10
2015	0.4696	0.4700	0.0004	0.10
2016	0.4636	0.4640	0.0004	0.09
2017	0.4585	0.4589	0.0004	0.08
2018	0.4507	0.4509	0.0002	0.06
2019	0.4410	0.4412	0.0002	0.05
2020	0.4437	0.4437	0.0001	0.01
2021	0.4500	0.4501	0.0001	0.02
2022	0.4474	0.4474	0.0000	0.01
2023	0.4419	0.4421	0.0002	0.03

자료: 저자 작성

2) 분위배율 및 점유율

- 각 연도별로 공제 적용 후 10분위·5분위 배율이 공제 적용 전보다 더 크므로 상하위 소득 간 격차가 약간 더 벌어졌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10분위 배율의 경우 공제 전과 비교해 공제 후 매년 0.07~0.09p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의 경우 0.01~0.04p 증가함
 - 이는 고소득층의 평균소득이 공제 적용 후 저소득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였음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소득공제 제도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역진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공제를 받아도 세금 혜택이 더 크기 때문임
 - 그러나 상대적 상승 폭이 크지 않아 구조적 소득 격차를 근본적으로 확대했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임

<표 IV-9>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 기준 분위배율 추이

과세 연도	공제 적용 전 소득 기준		공제 적용 후 소득 기준		공제 적용 전후 차이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2014	15.62	5.05	15.70	5.08	0.08	0.03
2015	14.71	5.14	14.79	5.18	0.08	0.04
2016	13.96	4.83	14.04	4.86	0.08	0.03
2017	13.59	4.58	13.67	4.6	0.08	0.02
2018	12.77	4.39	12.84	4.42	0.07	0.03
2019	12.15	4.22	12.22	4.24	0.07	0.02
2020	12.83	4.29	12.92	4.32	0.09	0.03
2021	12.54	4.30	12.62	4.32	0.08	0.02
2022	12.26	4.23	12.34	4.25	0.08	0.02
2023	12.02	4.13	12.09	4.14	0.07	0.01

자료: 저자 작성

- 소득 점유율 지표를 살펴보면 공제 적용 전후 하위 40% 및 상위 10% 점유율 모두 일부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는 연도별로 0.01~0.06%p 수준으로 매우 작음
 - 하위 40% 소득계층은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저 사용 기준 및 낮은 한계세율로 인해 동일한 공제금액이라도 세후 소득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
 - 상위 10% 소득계층에 대한 공제 적용 전후 점유율 차이는 2017년부터 소폭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한도 축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IV-10>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전후 소득 점유율 추이

(단위: %)

과세 연도	공제 적용 전 소득 기준		공제 적용 후 소득 기준		공제 적용 전후 차이	
	하위 40% 점유율	상위 10% 점유율	하위 40% 점유율	상위 10% 점유율	하위 40% 점유율	상위 10% 점유율
2014	11.65	31.82	11.61	31.81	-0.04	-0.01
2015	11.60	31.95	11.56	31.94	-0.04	-0.01
2016	12.01	31.73	11.97	31.72	-0.04	-0.01
2017	12.38	31.60	12.34	31.58	-0.04	-0.02
2018	12.98	31.37	12.94	31.34	-0.04	-0.03
2019	13.53	30.80	13.49	30.78	-0.04	-0.02

<표 IV-10>의 계속

(단위: %)

과세 연도	공제 적용 전 소득 기준		공제 적용 후 소득 기준		공제 적용 전후 차이	
	하위 40% 점유율	상위 10% 점유율	하위 40% 점유율	상위 10% 점유율	하위 40% 점유율	상위 10% 점유율
2020	13.40	31.05	13.36	30.99	-0.04	-0.06
2021	13.22	31.84	13.18	31.79	-0.04	-0.05
2022	13.35	31.73	13.3	31.68	-0.05	-0.05
2023	13.59	31.33	13.55	31.30	-0.04	-0.03

자료: 저자 작성

7. 효과성 분석 요약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고, 자영업자와 근로 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임
 - 최근 본 제도는 중상위 및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감소시키고, 중하위 및 저 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됨
 - 중상위(총급여 7천만~1억 2천만원) 및 고소득자(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의 한도가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축소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도서 및 공연비 지출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였고, 공제 대상 항목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점차 확대함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분포 분석 결과 본 소득공제 제도는 구조적으로 역진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득·다인 가구일수록 공제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인 반면, 저소득·1인 가구일수록 낮은 소비 여력으로 공제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총급여가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고소득·다인 가구일수록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 저소득·1인 가구일수록 최저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음

- 소득공제 특성상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본 제도는 구조적으로 역진성을 가짐
 - 또한 고소득·다인 가구일수록 공제한도를 초과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 집단의 공제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1인 가구일수록 생계비 수준이 낮고 소비 여력이 적어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는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을 통해 2018년 중상위 소득자의 공제한도 축소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사건연구 분석을 위해 총급여 4,500만~7,000만원 집단을 대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총급여 7,000만~9,500만원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함
 - 2018년 공제한도 축소 이후 처치 집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 문화·체육 지출에 대한 소비 촉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사건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문화·체육 지출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으로 인해 문화생활비 지출이 증가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2018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문화·체육 지출에 대한 30% 추가공제를 도입함
 - 사건연구 분석을 위해 총급여 4,500만~7,000만원 집단을 대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총급여 7,000만~9,500만원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함
 - 문화생활비 지출은 정책 시행 이후 처치집단의 문화생활비가 대조집단보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 확대가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는 소비 진작 목적의 추가공제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와 재정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집군 분석과 사건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과 20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추가 소득 공제 정책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또는 총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함

- 집군 분석에서는 정책상 기준점인 전년 대비 5% 초과 신용카드 사용 구간에서 납세자들의 소비가 전략적으로 집중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특정 구간에 소비가 몰리는 집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기준점 주변에서의 탄력성 역시 비탄력적으로 추정됨
- 이 결과는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 사건연구 분석에서는 근로소득자를 처치집단으로, 자영업자를 대조집단으로 설정한 후 2021년과 2022년 제도 도입 전후의 총지출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 시행 후 처치집단의 총 지출은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21년과 20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추가 소득공제 정책이 소비 진작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연도별 지니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이후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해당 제도가 소득불평등을 다소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줌

-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구조적으로 약함
- 그러나 2017년 이후 고소득자 대상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중저소득자 대상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니계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함
- 최근 소득공제 적용 전후의 지니계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득계층 간 불평등 수준을 실질적으로 거의 변화시키지 않음을 시사함

□ 지니계수 외에도 분위배율(10분위, 5분위) 및 소득 점유율(상위 10%, 하위 40%) 지표를 함께 살펴본 결과, 공제제도의 직접적인 구조적 불평등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제 적용 후 상하위 평균 간 소득 격차는 소폭 확대됨
 - 이는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적 특성(한계세율 차이 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소득 점유율 지표(상위 10%, 하위 40%) 기준으로는 전체 분배 구조의 변화는 미미하며, 특히 상위 10%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고소득층의 소득 집중도가 완화되는 양상도 일부 나타남

V.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V.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타당성 분석 결과 동 제도의 정책목표인 과표양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나, 해당 목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동 제도를 통한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비진작 효과도 발견되지 않음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대비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도 동 제도의 목적으로 언급되지만 이러한 정책목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수단 또한 동 제도보다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은 소득에 연계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효과성 분석 결과 동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된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
 -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을 통해 2018년 중상위 소득자의 공제한도 축소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감소하였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 문화·체육 지출 확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사건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18년 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이 문화생활비 지출을 증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도 발견되지 않음
 - 소비진작 목적의 추가공제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와 재정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집군 분석과 사건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21년과 20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추가 소득공제 정책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또는 총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 정책제언

-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동 조세특례로 인하여 매년 4조원 이상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당 조세지출이 정책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아 매년 사중 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공제제도는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과세행정 협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면 현금매출에 대한 세원이 즉각 음성화될 수 있음

- 다만 현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60%가량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동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장의 폐지보다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소득공제의 약 20%가량이 동 소득공제로 인한 것임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서는 동 제도가 95% 정도를 차지함
 - 이로 인해 동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간 20만원 가까이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2020년에는 18만 5천원, 2021년에는 17만 2천원, 2022년에는 20만 1천원, 2023년에는 17만 8천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이로 인해 실효세율은 0.41~0.4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세부담 경감 정도는 소득계층별로 다름

- 중장기적인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맞추어 동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인적공제 확대, 선택적 부부소득합산과세 등 소득세의 가족친화적 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상황임
 - 다만 이러한 제도 개편은 상당한 세수손실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소득세는 재원조달 기능 강화, 면세자 비율 축소,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세수효과, 소득계층별 세부담, 다른 공제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소득세의 중장기적인 개편 방향에 맞추어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 기본공제의 확대와 동 제도의 축소를 연계하여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하는 현행 기본공제는 2009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이에 기본공제 확대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세수손실, 면세자 비율 확대,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만약 기본공제를 확대하면서 동 제도를 축소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때 동 제도를 축소할 때에는 공제한도의 축소가 중요한데, 동 공제한도의 축소 규모는 기본공제 확대폭보다 더 클 필요가 있음
 - 동 공제는 가구원 수에 연동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확대폭과 동일한 폭으로 동 공제의 한도를 축소하면 세수손실이 클 수밖에 없음
 - 또한 기본공제 확대는 확대된 금액이 모두 적용되지만 동 공제의 한도 축소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동일하더라도 기본공제 확대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음
- 한편 동 제도를 폐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과세형평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필요경비 성격의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적합함
 - 다만 현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결제수단 선택을 왜곡하지 않을 정도의 세제혜택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공제대상 한도(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한도)와 공제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공제대상 한도를 낮게 설정할 경우 한도를 빠르게

소진하여 정책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 한도보다는 공제율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과 연간 500만원의 한도로 3%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은 모두 연간 최대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데, 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대 500만원까지 유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중복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처를 통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를 동 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음
- 사용처를 통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김동준·송가원·구균철·전승훈·황성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22. 9.

김재진·기은선,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9.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조성욱·이상아·이정인,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5-2호, 한국은행, 2025.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6차년도 재정패널 통합 설문지: 가구용』, 2024. 12.

Bertanha, M., McCallum, A. H., & Seegert, N., “Better bunching, nicer notching,” *Journal of Econometrics*, 237(2), 2023, Article 105512.

Jenkins, S. P.,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s(Generalized Lorenz curves and related graphs),” *Stata Technical Bulletin*, 48, 1999, pp. 4~18.

<통계자료 및 누리집>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시행 2025. 7.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778\)](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778)), 검색일자: 2024. 7. 21.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연혁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undefined>, 검색일자: 2025. 7. 21.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8호, 시행 2025. 7. 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_시행령/\(35498\)](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_시행령/(35498)), 검색일자: 2024. 7. 21.

한국은행, 「7.5.1. 신용카드」,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5.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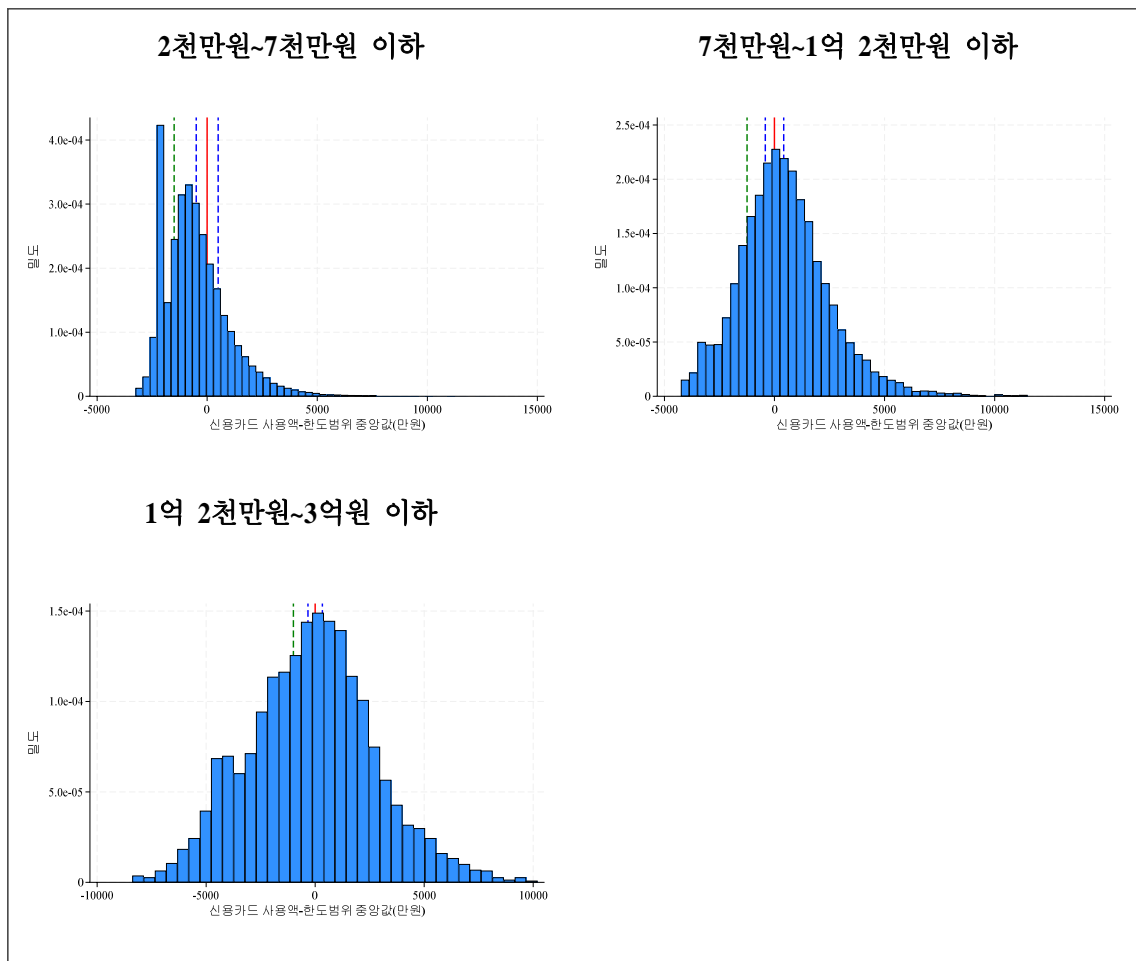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8~16차 조사, <https://www.kipf.re.kr/panel/index.do>,
검색일자: 2025. 2. 21.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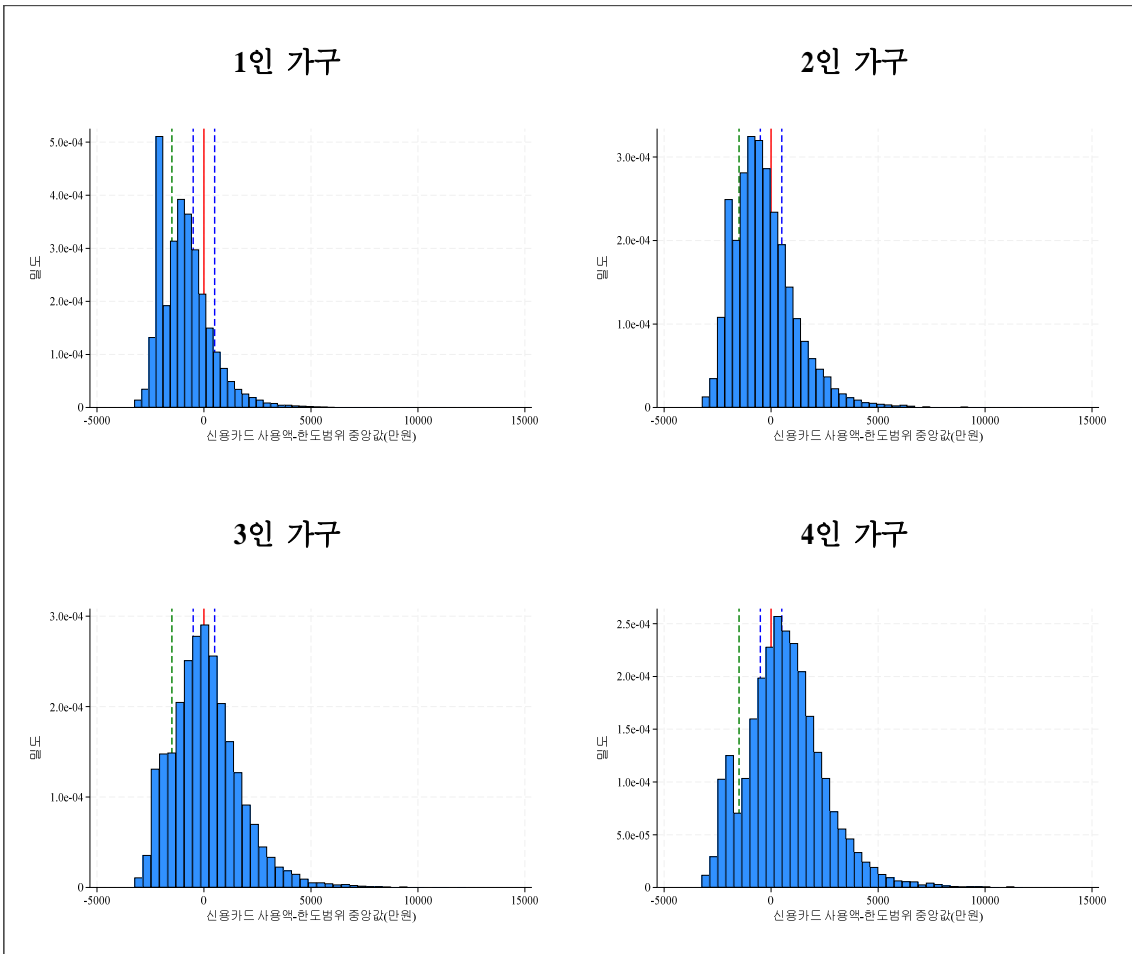
부록: 2019년 소득 규모별·가구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부도 1] 2019년 소득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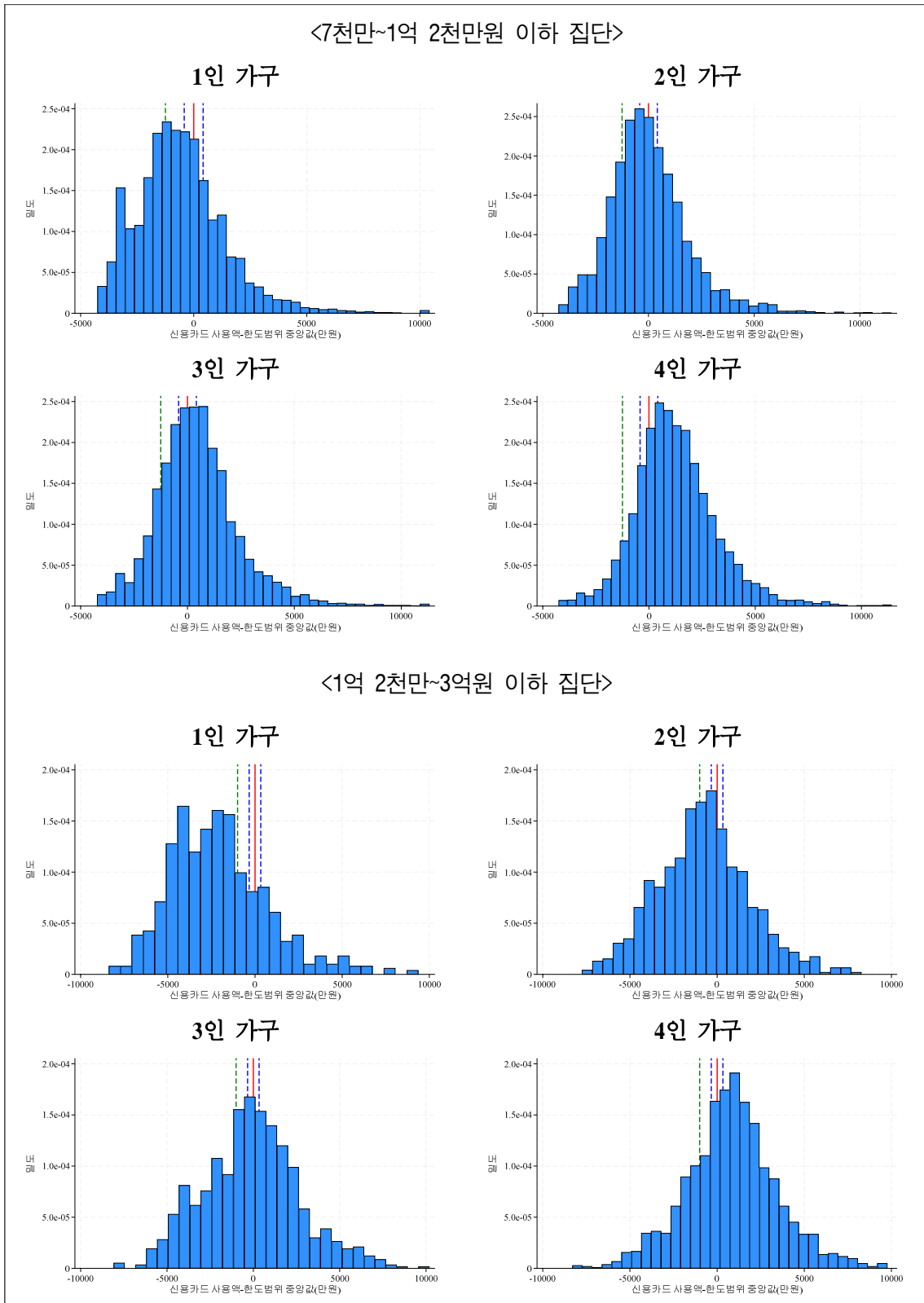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도 2] 2019년 가구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2천만~7천만원 이하 집단



주: 2019년에서도 분포가 유사하게 관찰됨
자료: 저자 작성

[부도 3] 2019년 가구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7천만~1억 2천만원 이하 집단과 1억 2천만~3억원 이하 집단



자료: 저자 작성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e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